



2018 의원연구모임결과보고서

2018. 12.

---

# 충청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의원 연구모임 운영 보고서

---

충청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의원 연구모임



# 목 차

|  |    |
|--|----|
| 인사말 .....  | 1  |
| 연구모임 사업계획서 .....   | 3  |
| 회차별 워크숍 결과 .....   | 7  |
| 연구모임 종합 연구결과 .....   | 11 |
| 연구모임 발표자료 .....  | 13 |
| . 충청북도 환경교육 조례 현황 및 개정 방향(박완희) .....                             | 13 |
| . 환경교육진흥법 개요와 개정 방향(최병조) .....                                   | 32 |
| . 충청남도 사회환경교육 현황(김문옥) .....                                      | 36 |
| . 충청남도 학교환경교육 추진 현황(여원구) .....                                   | 47 |
| . 충청남도 환경교육조례 개정 관련 제안(이재영) .....                                | 55 |
| .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현황 분석을 통한 충청남도<br>학교환경교육조례 제언(오창길) ..... | 58 |
| <별첨 부록 1> 환경교육 활성화 의원연구모임 회원명부 .....                             | 73 |
| <별첨 부록 2> 관련 보도자료 .....  | 74 |
| <별첨 부록 3> 의원연구모임 종합 토론문(요약) .....                                | 82 |



## 인 사 말

모임대표 홍기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기후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전문가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 대표로서 이 자리를 가지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환경교육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 위기 상황에서 나와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능 획득과 태도함양, 나아가 환경 실천을 위한 세계 시민의 기본 덕목입니다.

유엔은 1992년 리우선언을 통해 환경교육을 지속가능발전 핵심 전략으로 꼽았고, 2015년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곳곳에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2010년 ‘충청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 이후, 한 개의 광역환경교육센터와 네 개의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 중에 있고, 해마다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콘텐츠 개발과 보급,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도민 환경교육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등 관련 정책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관련 제도는 타 시,도에 비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을 목표로 짧은 시간 이지만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도민 환경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귀한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성과를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그간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충청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연구 모임

1. 대표자 : 홍기후 도의원

2. 연구목적 : 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

3. 연구과제 :

1) 충청남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2011-11-10 조례 제3641호)’ 개정안 마련

2) 충청남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안 마련

4. 연구방법

가) 추진 주체

지역 내,외 학계, 행정, 민간단체 등 20명 회원(연구위원) 위촉

나) 추진 내용

- 환경교육 제도화 사례 연구(워크숍 개최)
- 충청남도 환경교육 현황 및 과제 모색(워크숍 개최)
- 충청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제도화 방안 제안 및 검토(토론회)

다) 세부 추진 계획

① 타 시,도 관련 제도화 사례 연구(워크숍 개최)

- 일시 : 2018. 9월 18일(화) 14:00
- 장소 : (안)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타 시,도 환경교육 활성화 시책 및 제도 연구

- 프로그램

| 일시          | 내용  |
|-------------|---|
| 13:30~14:00 | 접수 (좌장: 구자명 한마음고등학교장)                                       |
| 14:00~14:20 | 개회,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홍기후 의원)                              |
| 14:20~15:00 | 주제발표 1 / 환경교육진흥법 개요와 개정 방향<br>-이재영(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
| 15:00~15:40 | 주제발표 2 / 타 시·도, (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 현황과 과제 개정 방향<br>-박완희(청주시의회 의원) |
| 15:40~16:00 |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   |
| 16:00~      | 폐회  |

② 충청남도 환경교육 현황 및 과제 모색(워크숍 개최)

- 일시 : 2018. 10월 23일(화) 14:00
- 장소 : (안)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충청남도 환경교육 현황 및 과제 토론
- 프로그램

| 일시          | 내용  |
|-------------|---|
| 13:30~14:00 | 접수 (좌장: 박노찬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 14:00~14:20 | 개회, 참석자 소개, 인사말 (홍기후 의원)                            |
| 14:20~15:00 | 주제발표 1 / 충청남도 사회환경교육 현황과 과제<br>-김문옥(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
| 15:00~15:40 | 주제발표 2 / 충청남도 학교 환경교육 현황과 과제<br>-여원구(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
| 15:40~16:00 |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   |
| 16:00~      | 폐회  |

③ 충청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제도화 방안 제안 및 검토(토론회)

- 일시 : 2018. 11월 20일(화) 14:00
- 장소 : (안)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충청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조례 제,개정안) 제안과 검토



- 프로그램

| 일시          | 내용  |
|-------------|---|
| 13:30~14:00 | 접수 (좌장: 안장헌 충청도의원)                                  |
| 14:00~14:20 | 개회,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홍기후 의원)                      |
| 14:20~14:40 | 주제발표 1 /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 개정안 제안<br>-차수철(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
| 14:40~15:20 | 주제발표 2 / 충청남도 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안 제안<br>-구자명(한마음고등학교 교장) |
| 15:20~16:00 |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   |
| 16:00~      | 폐회  |

라) 간사단 운영

- 연구팀 구성과 워크숍 운영, 사업 정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별도 간사단(4인 내외) 운영

5. 추진 일정

- 9월 중 연구 팀 구성과 1차 워크숍 추진
- 10월 중 2차 워크숍 추진
- 11월 중 3차 워크숍 추진
- 12월 중 조례 제,개정안 제안 및 활동 평가

| 사업 내용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연구팀 구성  |    |     |     |     |
| 1차 워크숍  |    |     |     |     |
| 2차 워크숍  |    |     |     |     |
| 토론회     |    |     |     |     |
| 정리 및 제안 |    |     |     |     |

6.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충청남도를 위한 환경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
- 관련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안을 마련
- 우리 도 환경교육 추진 주제 간 협치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함



## 1차 워크숍 결과 보고

### ■ 제1차 워크숍 개요

- 목적 : 연구모임 개요를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타 시,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관련 현황과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자리 마련
- 일시 : 2018. 9월 20일(목) 10:00
- 장소 :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사무실(1층 108호)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타 시,도 환경교육 활성화 시책 및 제도 연구
- 프로그램

| 일 시         | 내 용  |
|-------------|--|
| 09:30~10:00 | 접수 (좌장: 구자명 한마음고등학교 교장)                                    |
| 10:00~10:05 | 개회,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홍기후 의원)                             |
| 10:05~10:25 | 주제발표 1 / 환경교육진흥법 개요와 개정 제안<br>-최병조(전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사무처장)      |
| 10:25~10:45 | 주제발표 2 / 타 시·도, (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 현황과 제·개정 방향<br>-박완희(청주시의회 의원) |
| 10:45~11:00 |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  |
| 11:00~      | 폐회   |

### ■ 제1차 워크숍 주요 토의 사항

- 환경교육 정사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 검토, 추진 중임
- 특히,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사회환경교육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과, 종합계획 이행 평가 체계 구축,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및 활용 정책 수립, 환경교육 기관 등록제 등이 검토 중임

- 충남도는 환경교육 협치 기구 구성과 공공기관 환경교육 부분 의무화,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이 요청되고 있으며,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2차 워크숍 결과 보고

### ■ 제2차 워크숍 개요

- 목적 : 우리 도 사회, 학교 환경교육 현황을 알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일시 : 2018. 10월 31일(수) 15:00
- 장소 :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사무실(1층 108호)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우리 도 학교, 사회 환경교육 현황
- 프로그램

| 일 시         | 내 용  |
|-------------|--|
| 14:30~15:00 | 접수 (좌장: 박노찬 충남지속협 사무처장)                                |
| 15:00~15:05 | 개회,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홍기후 의원)                         |
| 15:05~15:25 | 주제발표 1 / 충청남도 사회환경교육 현황과 시사<br>-김문옥(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사무처장)   |
| 15:25~15:45 | 주제발표 2 / 충청남도 학교환경교육 현황과 시사<br>-여원구(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사) |
| 15:45~16:00 |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  |
| 16:00       | 폐회   |

### ■ 제2 워크숍 주요 토의 사항

- 충남도 사회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주요 현황을 이해함
- 충남의 환경과목 채택 학교 수는 49개교(중39, 고10교)로 16%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임

- 충남의 사회환경교육 지도자는 387명(2016년), 프로그램 운영 단체 수는 51개로 나타남
- 충남 환경교육활성화 시책으로는 환경교육 정보지 발간 배부(1만부),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매 해 환경교육한마당을 개최하고 있고, 2016년 이후 충남환경교육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활발히 활동 중임
- 특히, 환경교육실무협의회, 충남환경회의 등 민관 환경교육 협치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최근 마을 환경교육을 주제로 마을만들기 그룹 등과의 협력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3차 워크숍 결과 보고

### ■ 제3차 워크숍 개요

- 목적 : 우리 도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및 제정 방향 논의
- 일시 : 2018. 11월 21일(수) 10:30~12:00
- 장소 : 충남도서관 2층 회의실  
(홍성군 흥복읍 도청대로 577 충남도서관 / ☎ 041-635-8000)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13명

### ■ 참석 13명

| 구분 | 성명  | 소속            |
|----|-----|---------------|
| 대표 | 홍기후 | 교육위원회         |
| 간사 | 차수철 |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
| 회원 | 안장현 | 행정자치위원회       |
| 회원 | 이재영 |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
| 회원 | 황상연 |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
| 회원 | 최병조 |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회원 | 구지은 | 생태교육센터 워드     |
| 회원 | 문순수 | (사)내포문화숲길     |
| 회원 | 구자명 | 한마음고등학교       |
| 회원 | 이동준 |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회원 | 권경숙 |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

|    |     |            |
|----|-----|------------|
| 회원 | 김문옥 |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
| 발제 | 오창길 | (사)자연의벗연구소 |

- 내용 :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 개정안과 충청남도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 검토
- 프로그램

| 일 시         | 내 용  |
|-------------|--|
| 10:20~10:30 | 접수 (좌장: 안장현 충남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
| 10:30~10:35 | 개회,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홍기후 의원)                             |
| 10:35~10:55 | 주제발표 1 /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 개정안 및 정책 제안<br>-이재영(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
| 10:55~11:15 | 주제발표 2 / 충청남도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및 정책 제안<br>-오창길(자연의벗연구소 소장)     |
| 11:15~11:55 |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  |
| 11:55~12:00 | 기념 촬영 및 폐회   |

### ■ 제3 워크숍 주요 토의 사항

- 충남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시설 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경교육 시설 운영 현황 평가와 평가 기준 개발이 시급함
- 환경오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활용한 환경기금 조성 계획이 요구됨
- 환경교육지도사 고용 지원 제도의 마련이 검토되어야 함
- 충남형 학교환경교육 의무화(초2,5, 중 1 등)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 환경교육도시 지정, 선포를 위한 충남형 환경교육도시 모델 개발이 시급함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 교사 연수, 환경시범학교 운영, 다양한 학교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의 시책 발굴과 검토가 필요함

## 환경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종합 결론

### ■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부문

- 정부의 환경교육 정상화 방침 마련 작업 등을 고려하여 충남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함
- 우선 환경교육 콘트롤타워 및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해 도민, 시민사회, 행정,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청남도환경교육도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공공기관(학교 일부) 환경교육 부분 의무화(연간 4시간 환경교육 시행)를 검토하고, 관련 추진 체계와 예산(환경기금 활용 방안 마련) 반영을 제안함
- 또한 우리 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충남형 환경교육도시’ 모델 개발 및 시행을 위한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타 환경교육 시설 등록제 도입, 환경교육지도사 고용 지원 제도 마련, 지역 축제 연계 방안 등의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시책을 제안함
- 끝으로 위와 같은 기초와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충청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 개정이 요구됨

###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부문

-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 10 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이 시급함
- 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에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치 체계와 계획 수립과 이행, 그리고 환경교육 교사 역량 강화, 학교 환경교육 지원시설(충남학교환경교육체험장) 지정, 기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과제 등을 담아야 함
- 특히 학교환경교육 부분 의무화를 추진해 충청남도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초,중학교 일부 학년의 일정 시간 환경교육 의무화 방안을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충청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부문

- 우리 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 관련 기금 및 산재한 각 부서 예산을 통합,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관련 전담 부서의 마련이 시급함. 2016년 한 해 신설되어 운영하다 폐지된 '기후환경정책과 내 '환경교육팀'을 부활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전담팀은 각 부서에 산재한 환경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 조정하고, 우리 도 환경교육 정책을 총괄 수립, 집행하며, 마을만들기, 자원봉사, 해양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과의 연계 등의 업무를 전담해야 함
- 끝으로 도민의 환경 인식을 정례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충남도민 환경인식 조사' 사업을 3년 단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충청북도 환경교육 조례 현황 및 개정 방향

박완희 (청주시의원, 전)두꺼비친구들 상임이사)

## 1. 충북의 환경교육 동향

### 가. 충북 사회환경교육

#### 1) 충북 사회환경교육 발전과정

##### 환경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사회환경교육

- 1990년대 말 환경단체들이 창립하면서 환경보전사업이나 회원사업으로 환경교육이 시작됨.
- 2000년 생태교육연구소 터에서 제1기 자연안내자양성과정을 시작으로 충북지역에서는 생태교육, 환경교육의 인력양성이 시작됨.
- 2002년 충북생명의숲에서 숲해설가 양성과정이 시작되었고, 2006년 충북숲해설가협회가 창립하면서 숲해설 양성기관이 2곳이 지정됨.
- 2003~4년 청주시 산남동 원흥이두꺼비살리기 운동의 결과물로 두꺼비생태공원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 두꺼비생태문화관 개관을 시작으로 연간 6만여명의 탐방객이 다녀가는 생태학습장이 되었음.
- 2012년 맹꽁이생태문화관이 개관되면서 현재는 양서류생태공원으로 위상을 정립하였음.
- 3년여의 민관 협력을 통해 2016년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가 개관하였으며 청주의 환경체험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록학교 만들기」를 통한 환경교육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

#####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연대 협력

-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는 민관이 결합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2007년 창립이후로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2007),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2010), 두꺼비친구들(2012), 생태교육연구소 터(2014), 충북생명의숲(2016)가 사무처를 맡아 운영하고 있음.

-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는 환경교육활동가 워크숍을 비롯하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개최(2012) 충북환경교육한마당(2012), 생물다양성탐사대작전(2013) 등 창립 초기에 비해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시행 등 환경교육 전반에 걸쳐 환경교육단체들의 활동보다는 해설가나 안내자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활동가 개인들 간의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음.
- 환경교육과 상업주의가 결합되면서 환경교육 과외와 같은 사교육이 성행하기 시작했으며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가 지향해 왔던 환경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현재 충북지역 사회환경교육 단체들은 다양한 사업영역 중 부분적으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따라 집중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교재 및 교구개발 등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설립, 지정 등의 사안에 대하여 단체 및 기관 사이에 경쟁구조가 형성되고 있어 그 동안 형성되어 온 연대와 협력체계에서 갈등이 발생함.
-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교육의 위기, 변화의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순환 사무처 시스템만으로는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16년 말 충청북도 비영리민단단체등록을 통해 법적인 자격을 획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완결성 있는 충북지역 환경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2) 충북 사회환경교육 추진 현황

- 충북지역 사회환경교육은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약 16개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단체별로 68명의 상근자와 287명의 환경교육 강사 또는 지도사가 현장에서 사회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음.<sup>1)</sup>
- 국립공원 소속으로는 소백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휴양림을 비롯하여 유아숲 체험원(용정동, 성화동)을 조성하여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충청북도 소속 기관으로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미동산수

1) 국가환경교육센터, 2016, 2016 한국환경교육 현황 연구

목원, 내수면연구소 등에서 생태, 녹색소비 등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기초지자체인 청주시에는 두꺼비생태공원, 맹꽁이생태공원, 문암생태공원, 청주국제에코컴플렉스, 청주시기후변화체험관, 청주동물원 등이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을 탐방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
- 충주시에는 충주시자연생태체험관, 호암공원생태전시관이 있음. 단양군에는 국내 최대 민물고기 생태관인 다누리 아쿠아리움이 있으며 국내외 민물고기 187종, 22천여마리가 전시되어 있음.
- 대학에서는 충북대학교 부설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무심천을 중심으로 과학과 결합한 체험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교원대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황새복원을 성공한 황새생태연구원이 있으며 이곳에도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충북지역 환경교육 단체 현황]

| 단체명 <sup>2)</sup>        | 설립유형 |      |    | 주요사업 |    |    |      |      |        |    | 설립일         | 상근자수 | 강사, 지도자수(명) | 연체정규모(백만원) |
|--------------------------|------|------|----|------|----|----|------|------|--------|----|-------------|------|-------------|------------|
|                          | 비영리  | 임의단체 | 법인 | 정책개발 | 교육 | 양성 | 네트워킹 | 연구조사 | 교재교구개발 | 기타 |             |      |             |            |
| 사)두꺼비친구들                 | 1    |      | 1  |      |    | 1  | 1    | 1    |        | 1  | 2007.10.11  | 11   | 20          | 350        |
|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 1    |      |    |      | 1  | 1  | 1    | 1    | 1      |    | 2014.08.27  | 3    | 25          | 200        |
| 충북숲해설가협회                 | 1    |      |    |      | 1  |    |      |      |        |    | 2003.07     | 2    | 65          | 100        |
| 사단법인 풀꿈재단                |      |      | 1  | 1    |    |    | 1    |      |        |    | 2014.03.18  | 4    | 8           | 159        |
| 충청북도 지속발전협의회             |      | 1    |    | 1    | 1  | 1  | 1    | 1    | 1      |    |             | 4    | 40          | 172        |
| 녹색충주 지속발전협의회             | 1    |      |    | 1    | 1  | 1  |      |      |        |    | 2000.11.29  | 2    | 13          | 45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1    |      |    | 1    | 1  |    | 1    |      |        | 1  | 1995.04     | 4    |             | 261        |
| 생태교육연구소 '터'              | 1    |      |    | 1    | 1  | 1  | 1    | 1    | 1      |    | 1997.07.11  | 5    | 7           | 800        |
| 숲환경교육센터                  | 1    |      |    | 1    | 1  | 1  | 1    | 1    | 1      |    | 2007.01.30  | 2    | 20          | 56         |
| (사)충북생명의숲 국민운동           | 1    |      | 1  | 1    | 1  | 1  | 1    | 1    | 1      |    | 1998.10.27  | 4    | 20          | 179        |
| 충북환생교                    | 1    |      |    |      | 1  |    | 1    |      |        |    | 1998.       |      | 7           | 0.84       |
| 저탄소녹색체험학교 곤평늪            | 1    |      |    |      | 1  |    |      | 1    |        |    | 2002.       | 2    | 1           | 1200       |
| 충추YWCA                   | 1    |      |    |      | 1  |    |      |      |        | 1  | 1985.12.20. | 10   | 3           | 636        |
| 녹색청주협의회                  | 1    |      |    | 1    | 1  | 1  | 1    |      | 1      |    |             | 4    | 50          | 515        |
| 충북환경교사모임                 |      | 1    |    |      | 1  |    |      |      |        |    | 2001.09.01  | 10   | 0           | 0          |
|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부설 과학기술진흥센터 | 1    |      |    |      | 1  |    |      |      |        |    | 2005.       | 1    | 8           | 200        |
| 총계                       | 13   | 2    | 3  | 8    | 14 | 8  | 10   | 7    | 6      | 3  | -           | 68   | 287         | 4,873.84   |

2) 표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 및 기관 :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속리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천환경운동연합,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충청북도환경보전협회, 한살림청주, 미래환경연합, 샘나, 충북자연사랑유아교육연구회, 충북숲유치원연합회, 청소년수련마을 보람원, 미동산수목원, 충북식생활네트워크 등

[충청북도 시군별 환경교육 추진실적 (2017.~2018. 6.)]

| 연도          | 기 관             | 추진단체  | 추진내용  | 지원금액<br>(단위:천원) | 비고 |
|-------------|-----------------|---|---|-----------------|----|
| 2017        | 합 계             | 10개 단체  | 22개 프로그램  | 232,850         |    |
|             | 충북도             | 충청북도<br>지속가능<br>발전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기후학교 / 8,330명, 710회</li> <li>• 찾아가는 기후동화구연 / 1,694명, 76회</li> <li>• 도청기후학교 / 1,378명, 76회</li> <li>• 생물다양성학교 / 370명, 20회</li> <li>• 기후변화대응 샌드아트공원 / 4,000명, 20회</li> </ul> | 45,000          |    |
|             |                 |   | • 환경동아리 육성 / 7개 동아리   | 15,000          |    |
|             | 청주시             | 충북대학교<br>산학협력단  | • 환경생태체험프로그램 / 10,972명, 216회  | 100,000         |    |
|             |                 | 풀꿈환경재단  | • 환경체험교육 / 8,346명, 402회   | 28,474          |    |
|             | 충주시             |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기후학교 / 750명, 25회</li> <li>• 자연생태학교 / 320명, 8회</li> <li>• 환경한마당 행사 / 1,000명, 1회</li> <li>• 쓰레기 현장체험 / 750명, 25회</li> </ul>   | 8,000           |    |
|             | 제천시             |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슬방죽생태공원시민생태학교 / 2,214명, 120회  | 3,600           |    |
|             | 증평군             | 그린웨일리<br>환경연합증평   | • 그린웨일리 EM환경학교 / 150명, 2회   | 1,100           |    |
|             | 진천군             | 어린이<br>환경교육   | • 어린이 환경교육 / 831명, 47회  | 4,000           |    |
|             |                 | 숲해설가협회<br>진천지회  | • 숲체험 교육 / 1,280명, 73회  | 6,000           |    |
| 음성군         | 충북대학교<br>과학기술진흥 | •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 운영 / 600명, 20회  | 6,000   |                 |    |
| 단양군         | 충북수생태해설사협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학생 수생태 교육 / 493명, 17회</li> <li>• 청소년수련관 수업 / 20회</li> <li>• 단양취업센터 강의 / 4회</li> <li>• 한국수생태통합협회 수업 / 5회</li> <li>• 제일지역아동센터 수업 / 10회</li> </ul> | 15,676  |                 |    |
| 2018<br>상반기 | 합 계             | 6개 단체   | 14개 프로그램  | 151,310         |    |
|             | 충북도             | 충청북도<br>지속가능<br>발전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기후학교 / 3,870명, 330회</li> <li>• 도청기후학교 / 705명, 33회</li> <li>• 생물다양성학교 / 162명, 8회</li> <li>• 기후변화대응 샌드아트공원 / 1,547명, 4회</li> </ul>  | 20,500          |    |
|             |                 |   | • 환경동아리 육성 / 5개 동아리   | 7,500           |    |
|             | 청주시             | 충북대학교<br>산학협력단  | • 환경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 4,531명, 107회  | 100,000         |    |
|             |                 | 풀꿈환경재단  | • 환경체험교육 / 2,676명, 125회   | 10,810          |    |
|             | 충주시             |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기후학교 / 300명, 12회</li> <li>• 자연생태학교 / 120명, 3회</li> <li>• 환경한마당 행사 / 600명, 1회</li> <li>• 쓰레기 현장체험 / 300명, 12회</li> </ul>   | 4,400           |    |
|             | 제천시             |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슬방죽생태공원시민생태학교 / 1,570명, 70회   | 2,100           |    |
|             | 보은군             | 자체  | •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 / 110명, 1회  | -               |    |
| 진천군         | 숲해설가협회<br>진천지회  | • 숲체험 교육 / 774명, 44회  | 6,000   |                 |    |

## 나. 학교 환경교육

### 1) 충북 학교환경교육 추진 기반

-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충청북도 조례 제3570호, 2013. 6. 28.)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 법령               | 법령 내용   |
|------------------|---|
|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li> <li>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li> <li>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환경교육 및 관련 연구활동</li> <li>4.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의 설립·운영</li> <li>5.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li> <li>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li> <li>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li> <li>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li> <li>9.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li> <li>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li> </ul> |

-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충청북도 조례 제3659호, 2014. 8. 1.)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 법령            | 법령 내용   |
|---------------|---|
| 기본계획 수립 (제4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li> <li>○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전문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li> <li>3.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ol> </li> </ul> |
| 위원회 구성 (제7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숲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li> <li>○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한다.</li> </ul>   |
| 협력체계 구축 (제8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li> <li>○ 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li> </ul>  |

○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충청북도 조례 제3576호, 2013. 9. 27.)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 법령                                | 법령 내용   |
|-----------------------------------|---|
| <p>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li> <li>○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창의·인성교육과 연계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li> <li>2. 학교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li> <li>3. 환경동아리, 환경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li> <li>5. 교원의 학교환경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li> <li>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li> </ol> </li> </ul>                                       |
| <p>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학교환경교육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li> <li>○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li> </ol> </li> </ul>   |
| <p>위원회 구성 (제6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li> <li>○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 학교환경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li> <li>○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li> <li>○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li> <li>○ 당연직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기관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li> <li>○ 교육감은 위원 중 질병,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li> </ul> |
| <p>시범학교 지정·운영 (제10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li> <li>○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li> <li>○ 시범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li> </ul>  |
| <p>협력체계 구축 (제11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li> <li>○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i> </ul>   |

## 2) 충북 학교환경교육 추진 현황

### 충북교육청 「생태·환경교육」

- 충청북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업무는 과학국제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협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 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개최하고 있음<sup>3)</sup>.
- 충청북도교육청은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를 위하여 충북 맞춤형 생태·환경교육 모델 개발, 생태·환경교육 교원 연수,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사회 협력 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생태·환경교육 강화 사업 계획과 예산은 다음과 같음.

[충청북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강화 사업 계획 및 예산]

| 추진사업                    | 시기  | 목표  | 예산(천원) |
|-------------------------|-----|-----|--------|
| 1) 충북 맞춤형 생태·환경교육 모델 개발 | 연중  | 1회  | 56,000 |
| 2) 생태·환경교육 교원 연수        | 하반기 | 30명 | 6,000  |
| 3)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30교 | 72,000 |
| 4) 학교-사회 협력 환경교육 실천     | 연중  | 수시  | 3,750  |

### 충북교육청 「초록학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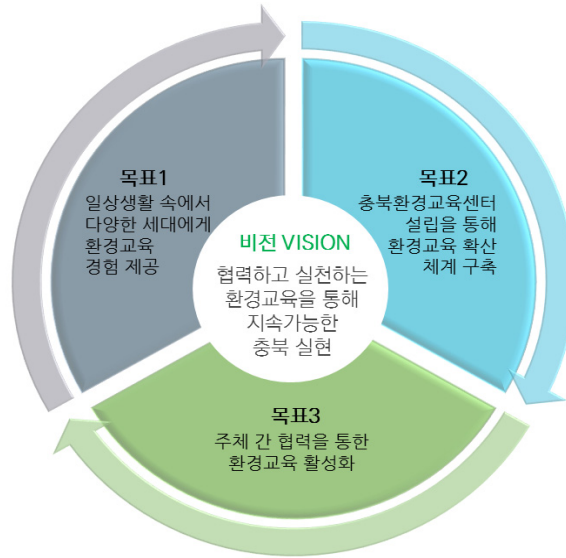
- 충청북도교육청 초록학교 만들기 업무는 과학국제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생태적 감수성 체험의 장, 초록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학교숲 조성 학교 공모, 학교숲을 활용한 환경교육 기틀 마련, 초록학교 만들기 추진 모델 개발, 학교숲 관련 교사 역량 강화 실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 계획과 예산은 다음과 같음.

[충청북도교육청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 계획 및 예산]

| 추진사업                   | 시기 | 목표  | 예산(천원)  |
|------------------------|----|-----|---------|
| 1) 학교숲 조성 학교 공모        | 연중 | 15교 | 932,500 |
| 2) 학교숲을 활용한 환경교육 기틀 마련 | 연중 | 수시  | 9,400   |
| 3) 초록학교 만들기 추진단 운영     | 연중 | 수시  | 22,000  |
| 4) 학교숲 관련 교사 역량 강화     | 연중 | 수시  | 15,656  |

3) 충청북도교육청, 2017, 2017 학교환경교육 기본 계획

## 2. 충북환경교육 비전 및 목표



[제2차 충북환경교육계획의 비전과 목표]

### 가. 비전

- 협력하고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충북 실현

### 나. 3대 목표

-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세대에게 환경교육 경험 제공
- 충북환경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환경교육 확산 체계 구축
- 주체 간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

### 다.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영역과 원칙

- 환경교육 기반 구축, 사회환경교육 강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영역
- 지속성과 실행가능성, 연계와 협력, 체계와 기반 중심의 원칙

### 라. 영역별 추진 과제 (3개 영역, 10개 추진과제)

| 3개 영역         | 10개 추진과제               | 추진계획 및 내용                      |
|---------------|------------------------|--------------------------------|
| 환경교육<br>기반 구축 | 1. 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     | 1-1 조례 개정 TF 위원회 운영 및 조례 개정 추진 |
|               | 2. 도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 2-1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



|                           |                            |                              |
|---------------------------|----------------------------|------------------------------|
|                           | 3.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3-1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
|                           |                            | 3-2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                           |                            | 3-3 도 내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
|                           | 4. 도 환경교육 진흥 기반 구축 및 운영    | 4-1 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
| 4-2 환경교육도 선포              |                            |                              |
| 사회<br>환경교육<br>강화          | 1. 충북형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1 환경교육도 선도사업 추진            |
|                           |                            | 1-2 지역기반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 1-3 이동환경교실 버스 개조 및 운영        |
|                           | 2. 생활형 환경교육 지원             | 2-1 환경교육 강사 파견 지원            |
| 2-2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페스티벌 개최 |                            |                              |
| 학교<br>환경교육<br>활성화         | 1. 학교환경교육 운영모델 발굴 및 지원     | 1-1 학교-사회 연계 환경교육 모델학교 발굴·지원 |
|                           |                            | 1-2 친환경 학교협동조합 발굴·지원         |
|                           | 2. 학교방문형 환경교육 강화           | 2-1 찾아가는 환경문화교실              |
|                           |                            | 2-2 찾아가는 체험환경교실              |
|                           | 3. 학교환경교육 지원 체계화           | 3-1 교육과정별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활동 지원   |
|                           |                            | 3-2 초등학생 4시간 환경탐방 이수제 지원     |

### 3. 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개정 및 환경교육 기반구축 과제

- 환경교육의 기반 구축 분야는 환경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임.
- 이를 위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는 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 도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도 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가 있으며, 이러한 기반을 통해 사회 및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기반 구축과 관련한 사업은 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추진하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충북 '환경교육 기반 구축' 영역 추진과제]

| 추진과제                   | 추진계획 및 내용                             |
|------------------------|---------------------------------------|
| 1. 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     | <b>1-1</b> 조례 개정 TF 위원회 운영 및 조례 개정 추진 |
| 2. 도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 <b>2-1</b>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
| 3.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b>3-1</b>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
|                        | <b>3-2</b>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                        | <b>3-3</b> 도 내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
| 4. 도 환경교육 진흥기반 구축 및 운영 | <b>4-1</b> 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
|                        | <b>4-2</b> 환경교육도 선포                   |

가. 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

■ 현황 및 필요성

- 도에서 환경교육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대로 갖춰질 필요가 있음.
- 현재 도에는 환경교육 관련 조례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있음. 현재 조례는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이 있음.
- 조례 중 일부 항목은 각 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정이 요구됨. 관련 예는 다음과 같음.
  - (제3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 환경교육계획은 도 환경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환경교육계획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어 점검 및 수정이 요구됨.
  - 예: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5.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정 및 삭제 필요.
  - (제7조)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 주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역할로 삼는 것이 합당하나, 이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점검 및 수정이 요구됨.

예: 3.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6. 환경도서관 운영 →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정 및 삭제 필요.

- (추가)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환경교육 진흥협의회’가 조례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환경교육 분야의 흐름과 법 체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1-1 조례 개정 TF 위원회 운영 및 조례 개정 추진

### ■ 추진목적

-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한 과정의 민주성 확보 및 발전적 결과 도출 가능성 제고
- 조례 내용 강화를 통한 도 환경교육 진흥 및 환경교육도 선포의 근거 마련

### ■ 추진개요

- 조례 개정 TF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및 위원 추천 (도의원, 전문가, 관련 이해당사자 등)
- 위원 선정 및 위촉 절차 진행
- 조례 개정을 위한 TF 위원회 운영
- 공청회 개최 및 개정안 마련 (도의회 협력)
- 조례 개정 추진 (도의회)

## 나. 도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 ■ 현황 및 필요성

- 도에서 환경교육 사업을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행정 주체가 필요함.
- 실제 경기도의 경우 환경국-환경정책과-환경교육팀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담팀이 관련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안정적,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충북도에는 환경교육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관련 팀에서 환경교육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음.
- 도가 환경교육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려면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환경교육 전담팀은 제2차 충북환경교육계획 이행 주체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이행 평가를 수행해야 함.
- 또한 도 내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환경교육 관련 사업의 체계를 수립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도 환경교육 사업의 균형성 확보, 중복 사업 방지, 사업 교류를 통한 상승효과 등의 결과를 얻게 할 수 있음.
- 전담팀 인력은 교육 및 환경교육에 대한 지식, 경험 등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 도 환경교육 사업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2-1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 ■ 추진목적

- 도 내 환경교육 전담팀을 설치하여 도 환경교육 진흥의 행정적 기반 마련

### ■ 추진개요

- 환경교육팀 설치를 위한 도 내 조직 개편, 인력 확보 등 준비 작업
- 환경교육팀 설치
- 전담 업무 추진
  - 제2차 충북환경교육계획 관련 예산 확보, 추진, 이행 평가
  - 도 내 부서별 환경교육 사업 취합, 점검, 협력체계 구축
  - 제2차 충북환경교육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 제3차 충북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교육팀 주요사업 예시]

| 주요 기능                  | 세부 업무  |
|------------------------|--|
| ① 환경교육 정책 수립 및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진흥법 검토 및 이행</li> <li>·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 점검, 평가</li> <li>· 환경교육도 실행에 따른 관련 행정 사항</li> </ul> |
| ②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환경교육센터 지정, 설립,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li> <li>· 기초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
| ③ 도 내 환경교육 관련 기관 협력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지역 환경교육 관련 단체, 학교 지원 사업</li> <li>· 각 단체 및 학교 간 연계 지원</li> </ul>                                |
| ④ 환경부, 타 지역과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및 타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 사업</li> </ul>  |

다.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도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환경교육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이행하는 주체가 필요하며, 이 주체는 충북환경교육센터가 될 수 있음.
-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환경교육센터 1개, (광역)지역환경교육센터 8개가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광역 단위의 경기도환경교육센터가 2014년부터 설치·운영되면서 환경교육 체계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기초 단위의 지역환경교육센터가 10개 지정·운영되고 있어, 국가-광역-기초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충북의 경우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7조에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제2차 충북환경교육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충북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충북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시급히 요구됨.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 단위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단계적 추진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 환경교육센터 관련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함.

-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서울환경교육센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3-1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 ■ 추진목적

-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과정의 체계화 및 사업 성공 가능성 제고

#### ■ 추진개요

-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연구를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및 예산 확보
  - 과업지시서 포함 내용
    - 설치 형태에 관한 사항(도 직영, 독립기관 또는 법인 설립, 지정 위탁 등)
    - 조직에 관한 사항 (조직 체계, 필요 인력 수 및 자격조건 등)
    - 비전, 목표,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
    - 역할에 따른 장·단기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연구 사업 발주 및 연구팀 선정
- 연구 수행 관리 (착수보고, 중간보고, 공청회, 최종보고)
  - 연구팀 대상 주요 요청 사항
    -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타 (광역)지역환경교육센터 사업 검토 및 연계 고려
    - 충북 환경교육 상황 및 특성을 반영한 계획의 수립
    - 학교, 사회 등 다양한 대상 고려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 및 중요도에 따른 단계적 추진 계획 제시
- 최종보고서에 기반하여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확정

■ 추진주체

- 충북도청 환경정책과

**3-2**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추진목적

- 제2차 충북환경교육계획의 추진 장치 마련을 통한 실질적 이행 성취
- 환경교육 사업의 체계화 및 안정화를 통한 충북 환경교육의 진흥

■ 추진개요

-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 예산 확보 (국비, 도비 등)
- 마련된 계획에 기초하여 비전, 목표, 주요사업, 운영 및 사무처리지침 마련

[충북환경교육센터 주요사업 예시]

| 주요기능       | 세부 사업   |
|------------|---|
| ① 연구 및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환경교육 방향 설정 및 정책 개발</li> <li>· 도 환경교육 사업 점검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li> <li>· 충북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콘텐츠 탑재<br/>(환경교육 소식, 충북 환경교육 현황 자료, 환경교육 자료, 사업홍보 및 접수 등)</li> <li>· 충북 환경교육 현황 자료 구축<br/>(환경교육 기관·단체, 환경교육프로그램, 인력 풀, 환경교육 장소·시설, 환경교육 자료, 요구조사 결과 등)</li> </ul> |
| ② 인력 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기관·단체 기획자 및 강사 역량 강화 연수</li> </ul>  |
| ③ 활동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자료 개발, 발굴, 보급</li> <li>· 환경교육 사업 지원</li> <li>· 환경교육 기관·단체 대상 상시 컨설팅</li> </ul>  |
| ④ 네트워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내 환경교육 기관·단체 연계 기회 마련</li> <li>· 충북환경교육한마당 개최</li> <li>· 국가 및 타 (광역)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기회 마련</li> <li>· (기초) 환경교육센터와의 정기 협의회의 개최</li> </ul>   |
| ⑤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사업평가, 특화사업 등 필요한 사업</li> </ul>   |

- 마련된 계획의 설치 형태(도 직영, 독립기관 또는 법인 설립, 지정 위탁 등)에 기초하여 충북환경교육센터 설치
- 충북환경교육센터가 수립한 연간 사업계획 검토 및 확정(설치 형태에 따라 조정)
-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설치 형태에 따라 조정)

### 3-3 도 내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 ■ 추진목적

- 도 내 지역 환경교육의 균등 발전
- 환경교육센터 체계 마련을 통한 환경교육 사업의 효율성 제고

#### ■ 추진개요

- 도 내 2개 지역(남부, 북부. 예: 영동군, 제천시)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예산 협의 (도비+시비)
- 해당 2개 지역에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우선 지정하여 환경교육센터 역할 분담
- 도 내 전 지역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예산 협의 (도비+시비)
- 5개 이상 지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이후 충북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 역할 조정

[충북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역할 조정 후 주요 사업 예시]

| 구분         | 충북환경교육센터  | 지역환경교육센터   |
|------------|---|--|
| ① 연구 및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환경교육 방향 설정 및 정책 개발</li> <li>· 도 환경교육 사업 점검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li> <li>· 충북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콘텐츠 탑재</li> <li>· 충북 환경교육 현황 자료 구축 계획 수립 및 결과 공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환경교육 방향 설정 및 정책 개발</li> <li>· 지역 환경교육 사업 점검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li> <li>· 충북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공동 운영</li> <li>· 충북 환경교육 현황 자료 수집 시행</li> </ul> |
| ② 인력 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기관·단체 기획자 및 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기관·단체 기획자 및 강사 역량 강화 연수 시행</li> </ul>  |
| ③ 활동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자료 개발</li> <li>· 환경교육 사업 지원</li> <li>· 지역환경교육센터 대상 상시컨설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자료 발굴, 보급</li> <li>· 지역 환경교육 기관·단체 대상 상시 컨설팅</li> </ul>  |
| ④ 네트워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환경교육 기관·단체 연계 기회 마련</li> <li>· 충북환경교육한마당 개최</li> <li>· 국가 및 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환경교육 기관·단체 연계 기회 마련</li> <li>· 충북환경교육한마당 공동 개최</li> </ul>   |



|      |  |                           |
|------|--|---------------------------|
|      | (광역)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기회 마련<br>· 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정기 협의회의 개최 |                           |
| ⑤ 기타 | · 홍보, 사업평가, 특화사업 등 필요한 사업                          | · 홍보, 사업평가, 특화사업 등 필요한 사업 |

- 지역 행정기관과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협의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도·감독은 해당 지역 행정기관이 담당)
- 충북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협력 운영 지원 및 11개 전 지역의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준비 (전 지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 관련 사항은 제3차 충북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

## 라. 도 환경교육 진흥기반 구축 및 운영

### ■ 현황 및 필요성

- 도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으고 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경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기관 내 부서 간 협력, 기관별 협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는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행정, 전문가, 민간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도 환경교육 방향 및 사업에 대한 자문과 협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진흥협의회에는 도의회 관련 위원회장 및 위원을 포함시키고, 협의회에서 논의 및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의원이 발의하여 조례 신설 및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충북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연환경, 발전적인 발전정책<sup>4)</sup>과 신성장동력(유기농업, 바이오, 태양광)을 특화하기 위해서 환경교육도를 선포하고 일정한 환경학습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4) 충청북도는 2016년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7년도에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2018년 상반기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며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16년에 충북행복지구(충주, 제천, 진천, 음성, 괴산, 보은, 옥천)를 지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청주행복지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들과 연계한 환경교육도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음

## 4-1 도 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 ■ 추진목적

- 자문 및 협력을 통한 도 환경교육 진흥

### ■ 추진개요

-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협의회 운영 규정 마련 및 위원 추천

[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안 (총14명)]

| 구분      | 구성   |
|---------|--|
| 위원장 (1) | · 도지사 또는 부지사   |
| 부위원장    |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 당연직 (7) | · 도 환경녹지국장<br>· 도 보건복지국장<br>· 도 문화체육관광국장<br>· 도 행정국장<br>· 도 의회 관련 위원회 위원 1<br>· 도 의회 관련 위원회 위원 2<br>· 도 교육청 교육국장 |
| 위촉직 (6) | · 환경교육 전문가 1<br>· 환경교육 전문가 2<br>· 학교 교사 1<br>· 학교 교사 2<br>· 사회환경교육단체 관계자 1<br>· 사회환경교육단체 관계자 2                   |

- 위원 선정 및 위촉
- ‘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운영 (연 4회)
- 필요 사항에 대해 조례 신설 및 개정 추진
- 진흥협의회 협의 안건 기획 및 실무 지원을 위한 실무기획단(사업단 또는 추진단) 운영 가능

■ 추진목적

- 충북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충북이 추구하는 유기농업, 바이오산업, 태양광산업 기반을 충북의 미래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도정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환경교육정책 마련
- 충북의 도정 슬로건인 ‘생명과 태양의 땅’을 구체화 하고 충북도민 누구나 행복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 충북을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지 표현
- 전 지구적 사안인 기후변화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충북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
- 충북도민의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상적 환경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기회 마련

■ 추진개요

- 환경교육도 선포 추진단 구성- 행정, 의회, 전문가, 환경교육단체 및 기관, 관련 이해당사자 등- 환경교육도 선포 계획 수립
- 환경교육도 선포계획 수립- 지역사회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환경교육도 충청북도 선포식- 충북환경교육한마당 병행- 환경교육도 선언문 발표 - 환경교육도 사업 목표와 과제 제시
- 필요 사항에 대해 조례 신설 및 개정 추진

※ 위 자료는 제2차 충청북도 환경교육종합계획 보고서 (2017. 10)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음을 밝힙니다.

# 환경교육진흥법 개요와 개정 방향

최병조(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환경교육진흥법 개요와 개정방향

최병조(협동조합환경교육연구소)



## 환경교육진흥법 주요 내용





이재영.국가환경교육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2017

## 유치원 ~ 고등학생 환경교육 의무화: 4시간/1학기

| 범주          | 학년급 | 환경교육 주제 영역                 | 관련 시설              |
|-------------|-----|----------------------------|--------------------|
| 유치원<br>어린이집 | 3세  | 자연생태: 숲, 강, 바다, 습지 등       | 생태공원               |
|             | 4세  | 생활환경: 쓰레기, 공기, 물, 유해화학물질 등 | 유아환경교육관(광역산환경교육센터) |
|             | 5세  | 지구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 기후변화체험관(수원_두드림)    |
| 초등학생        | 1학년 | 자연생태: 숲, 강, 바다, 습지 등       |                    |
|             | 2학년 | 생활환경: 쓰레기, 공기, 물, 유해화학물질 등 | 자원순환센터(화성에코센터)     |
|             | 3학년 | 지구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 에너지교육관(에너지드림센터)    |
|             | 4학년 | 자연생태: 숲, 강, 바다, 습지 등       | 자연환경연수원            |
|             | 5학년 | 생활환경: 쓰레기, 공기, 물, 유해화학물질 등 |                    |
|             | 6학년 | 지구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                    |
| 중학생         | 1학년 | 자연생태: 숲, 강, 바다, 습지 등       | 민물고기체험관, 산림교육센터    |
|             | 2학년 | 생활환경: 쓰레기, 공기, 물, 유해화학물질 등 |                    |
|             | 3학년 | 지구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                    |
| 고등학생        | 1학년 | 자연생태: 숲, 강, 바다, 습지 등       | 국립공원, 조류생태전시관      |
|             | 2학년 | 생활환경: 쓰레기, 공기, 물, 유해화학물질 등 |                    |
|             | 3학년 | 지구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 국립생태원              |

이재영.국가환경교육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2017


## 학교 안 우수사례: 경남교육청

| 구분               | 내용  |
|------------------|---|
| 비전과 방향           | · 박종훈 경남교육감 중점 추진 5대과제 중 [4번 생태환경교육]  |
| 시설조성 및 보완        | · 우포생태교육원<br>○ 환경교육센터로서 역할 강화<br>- 운영 인력 확충(전임 연구사, 파견교사, 연구년제 교사)<br>- 학교 생태환경교육 정책을 연구, 컨설팅<br>○ 국제규모 우포국제습지교육원 추진<br>- 지자체, 환경부 국비대응투자 유치 방안 검토  |
| 위탁교육, 네트워크, 연대협력 | · 우포생태교육원을 통한 체험중심 습지생태환경교육<br>- 시기 : 3월~12월<br>- 대상 : 도내 전 초등학교 3학년<br>- 예산 : 초등 3학년 기준 1인당 1만원(학교운영비)<br>- 창원시청(주남저수지), 김해시청(화포천), 통영시청(통영 RCE), 하동군(지리산생태과학관),경상남도(환경교육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봉암갯벌) |
| 조직구성 및 운영(일자리)   | · 교육청 내에 전담 조직 편성(기관과 청내 전담부서)<br>-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예술환경담당총 4명인데 환경교육은 2명<br>· 전담 인력을 채용(전문 장학사, 전문 영역 박사)<br>- 우포생태교육원(연구사, 파견교사 3명, 강사 3명, 행정실장, 청소, 총 8명)                                       |
| 조례, 내규 제정 등      | - 2015년 생태환경교육 진흥조례를 제정<br>- 도교육청 자체 조례이며, 도청 조례는 교육청에 영향력이 없음<br>- 2017년에 학교숲, 학교덧밭 조례도 만들었음   |
| 예산 및 기금 확보       | - 2017년 예산 884,200,000원 / 2016년 예산 252,600,000원<br>- 예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소액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



이재영.국가환경교육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2017


## 학교 밖 우수사례: 성남시



**내고장 성남**

**환경교육(초4, 초5 대상)**  
생태환경교육, 관내 환경에너지시설 탐방

- 일상생활에서 분리수거와 물 절약 생활화
- 건강하고 행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에너지의 필요성 인식




성남시 공고 제2015-178호

**학교 환경교육 강사 모집**

2016년도 성남형교육의 연계하여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환경교육(성남형교육 내고장 성남)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12월 일  
성남시 환경정책과

- 모집 접수기간: 2015. 12. 21(화) ~ 12. 30(수)
- 모집인원: 00명
- 모집대상: 환경교육 관련 자격증 혹은 다수의 강의경험이 있는 자
- 모집분야: 학교 환경교육 분야 (풀임1 참조)
- 활동장소: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및 환경시설
- 교육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강사활동기간: 2016. 3. 1~ 2016. 12. 31.
- 강사 수당: 1회차 당 70,000원(1회 2교시 수업)
- 강사활동방법
  - 교육강사 채용 후 학교 환경교육 강사 심화교육 의무 이수
  - 교육이수자에 대해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계약, 교육시간 및 교육료수는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배정
  - 배정된 시간에 한하여 학교 환경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그 외 시간은 다른 기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 가능
- 신청자격
  - 환경교육의 전문성과 필요한 기본소양 및 자질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인할 수 있는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이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곳에서 80시간 이상 교육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환경관련 학문 및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인된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서 발급하는 환경관련 전문교육·핵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재영.국가환경교육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7

# 환경교육 제도화 1.5기(2008. 5. 28)

<의안 13806'호 환경교육진흥법 일부 개정 내용>

| 현 행   | 개 정 안(2018.5)   |
|---|---|
| 제4조(책무) ① (생략)<br><br><신설>  | 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br><br>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br>-----학교·법인--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

##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연구(이미숙, KEI, 2014)

|             | 개정방향(수정)  | 개정방향(강화)   | 개정방향(의무화)   |  |
|-------------|---|--|---|--|
| 정의          | 범위와 내용 추가   | 환경교육 담당 부처와 조직 명시  |   |  |
| 책무          |   |  | 모든 국민의 책무 규정  |  |
| 위임회         | 세부내용 수정, 심의내용 추가                                  |  |   |  |
| 환경교육 중립계획   | 세부내용 수정, 높은 책임 부과                                 | 세부내용 구체화, 개정주기 단축, 세부내용 추가, 관련부처 확대, 관리, 보고, 평가, 인센티브 방안 | 환경교사 및 환경교육 의무화, 지역계획 미 수립 단서조항, 시행/결과보고 의무화 및 단서조항 | 환경교육진흥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수요를 나타냄                           |
| 학교 환경교육     | 세부내용 수정, 강행규정 또는 주체 변경                            | 세부내용 구체화, 세부항목 추가, 인센티브 방안                               | 환경교사 및 환경교육 의무화, 국가고시 내 환경문제 출제 고려                  | 세부 항목별 개정여부 및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
| 사회 환경교육     | 세부내용 수정, 세부내용 보완                                  | 세부내용 구체화, 세부항목 추가, 학교-사회 협력                              | 전국민 및 직무관련 의무 환경교육, 인센티브 방안, 교육성과 평가                |  |
| 사회 환경교육 지도사 | 명칭 간소화, 자격경신 규정, 자격요건 명확, 강행규정, 제한 기준 추가, 예산지원 방안 | 세부내용 구체화, 자격유형 설정, 교육내용 개편(자격요건 및 역량강화), 양성기관의 위계와 체제 설정 | 활용 및 채용기회 확대방안, 활용실적 보고 및 평가 의무화                    | 후속연구를 통해 환경교육진흥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의와 공청회를 통한 합의안 도출 진행 |
| 환경교육 프로그램   | 인증표시 변경, 해양조항 구체화, 인증신청서 수정, 세부조항 수정              | 재 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마련, 취소조건 강화                               | 활용방안 마련, 인증신청 자격, 재정지원, 체계적 정보공지                    |  |
| 환경교육 센터     | 세부내용 수정, 강행규정, 지정요건 보완, 예산지원 방안                   | 지정연한 및 복수지정 여부 규정, 세부내용 추가, 센터 위상 수립                     | 설립과 지정의 타당성 논의, 별도의 법으로 고려                          |  |
| 경비지원        |   |  | 기금, 재단 등 세부방안 마련                                    |  |
| 위임위탁        | 업무규정 보완   | 운영관리 방안  |   |  |
| 과태료         |   |  | 과태료, 벌금(벌칙) 강화 및 대상 확대                              |  |

Trade-off

현재 문제점의 해결가능성 검토 필요 ← → 강화 및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충청남도 사회환경교육 현황

김문옥(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사무처장)

## 충청남도 사회 환경교육 현황

2018. 10. 31.



### 1. 법규 현황

#### <환경교육진흥법>

- 2008년 제정, 2018년 부분개정
- 환경교육진흥위원회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 국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인증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충청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 (2011년, 조례 제 3641호)

- 기본이념과 책무
-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 환경교육에 대한 자문
-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 환경교육센터
-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 2. 제2차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

가. 계획적용년도 : 2017년 ~ 2021년 (5개년)

- 나. 계획의 성격
- '환경교육진흥법'과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의한 **법정 계획**
  -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

**비전** 통합적 환경교육의 일상화를 통한 행복한 충남

- 목표**
-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
  - 기반 구축 확대를 통한 환경교육 역량 배가
  - 일상적 환경교육 협치 확대

**추진  
원칙**

- 통합성 : 주제, 장소, 목적의 통합적 접근
- 일상성 : 모든 도민에게 환경교육 제공
- 지역성 : 충남 특성 반영 환경교육 실천

**추진  
전략**

- 통합적 환경교육 협치 체계 구축
- 인식개선과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
- 예산 확보 방안의 다각화, 구체화

## 2. 제2차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

다. 추진체계



## 2. 제2차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

라. 2대 분야 20개 추진과제



## 3. 지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진흥법과  
충남환경교육진흥조례에 의해

1개 광역환경교육센터와  
4개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어 활동 중

###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서산지역환경교육센터)  
주 소 서산시 반화2로 343층(서풍빌딩)  
전 화 041-667-3010  
주요활동 갯벌교육, 도민생태 감성체험, 조류 탐사  
운영기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 서천군조류생태전시관

(서천지역환경교육센터)  
주 소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916  
전 화 041-956-4002  
주요활동 갯벌과 새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활동, 놀이, 관람, 만들기 활동  
운영기관 서천군



### 서천기후변화교육센터

(서천지역환경교육센터)  
주 소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849  
전 화 041-956-8789  
주요활동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 행동 실천 유도, 기후변화교육센터 거점역할  
운영기관 서천군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  
(광역환경교육센터)  
주 소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안심대길 50  
전 화 041-572-2535  
홈페이지 www.cneec.kr  
운영기관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금산생태과학체험장

(금산지역환경교육센터)  
주 소 금산군 제원면 덕실길 16  
전 화 041-751-2415-6  
주요활동 습지탐사 프로그램, 체험환경교육 운영  
운영기관 금강나루영농협동조합



## 4.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CEEN)

<창립목적> 충남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회원 단체 간 협력

<성 격> 정보 교류, 상호 협력을 위한 회원 단체들의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

<주요활동>

1. 충남환경교육을 총화 하는 <충남환경교육한마당>
2. 충남지역 환경교육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가 연수>
3. 충남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활동>
4. 회원단체간 협력 강화를 위한 <회의>, <소식지>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5. 국내외 협력 및 교류 활동

<연 령>

- 2006년 7월 창립총회 / 제2회 한국환경교육한마당 개최
- 2009년 9월 제1회 충남환경교육한마당 / 국제교류 - 일본(구마모토 환경넷)
- 2013년 11월 제2회 충남환경교육한마당 / 국제교류 - 말레이시아(MNS)
- 2014년 11월 제3회 충남환경교육한마당 / 국제교류 - 중국(자연지우)
- 2015년 12월 제4회 충남환경교육한마당 / 국제교류 - 필리핀(CEC)
- 2016년 11월 제12회 한국환경교육한마당 개최 / 국제교류 - 대만(중화민국환경교육학회)
- 2017년 12월 제5회 충남환경교육한마당 / 국제교류 - 일본(큐슈 환경교육넷)
- 2018년 9월 제6회 충남환경교육한마당 / 국제교류 - 대만(중화민국환경교육학회)

<참여단체> 38개 기관 및 단체 (2018년)

<국내외 협력 및 교류 현황>

국내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국외

일본 : 구마모토환경넷

말레이시아 : MNS (Malaysia Nature Society)

중국 : 자연지우, 마법고양이예코수공방

필리핀 : CEC (Center for Environmental Concerns)

대만 : 중화민국환경교육학회

## 4.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CEEN)

<가입단체> (가나다 순)

사)내포문화숲길, 사)내포생태교육연구소,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금강유역환경연구소, 너나들이 여행사, 늘푸른나무(논산환경교육센터),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령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육센터 워드,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서천기후변화교육센터, 식생활교육천안네트워크, 식생활교육충남네트워크,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으밀야밀소, 작은손 직정기술 협동조합, 조류협회 홍성지부, 지천생태모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경양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태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태안해안국립공원,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성생태학교 나무, 협동조합 환경교육연구소

<조직구조>

공동대표 이진현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변호사)

공동운영위원장 박노찬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센터장)

사무국장 김문옥(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사무처장)

운영위원 38개 가입단체 전체



## 5. 충남 환경교육 자원

환경교육 자원 : 사람, 프로그램, 시설(장소)

### 가. 사람 : 해설가

| 총계      | 인원  | 5년 미만 | 5년~10년 | 10년 이상 |
|---------|-----|-------|--------|--------|
|         | 387 | 277   | 102    | 4      |
| 숲해설가    | 12  | 5     | 3      | 4      |
| 자연생태해설가 | 115 | 106   | 6      |        |
| 기후변화    | 111 | 70    | 40     |        |
| 기타      | 149 | 96    | 53     |        |

\* 이 외에 2015년부터 양성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약 15명이 있음

2016년 말 기준 (충청남도)

### 나. 프로그램 : 충청남도 내 환경교육프로그램 제공 현황

- 1) 프로그램 운영 단체 수 : 51개 기관 및 단체
- 2) 2018년 운영 프로그램 수 : 113개 프로그램 및 사업

## 5. 충남 환경교육 자원



### 2018 충남환경교육 프로그램 정보

#### 공주

| 프로그램 / 주제  | 일시 / 장소 / 기간   | 주요 / 문의   |
|--|--|---|
| <b>숲해설, 생태교육, 생태공예</b><br>숲해설가 1명<br>숲해설가 1명<br>생태공예(자연재료로 자연물 활용하기)<br>생태공예(자연재료로 자연물 활용하기) | 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 | 충청남도자연환경교육진흥공사 공주시 환경교육팀 20-3 (충청남도 공주)<br>TEL : 042-829-0908<br>E-mail : smmoo@nhe.go.kr<br>facebook.com/nhepublicaffairs<br>@nhepublicaffairs |
| <b>기후변화대응교육 찾아가는 에코학교실</b><br>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 일 시 : 4월~10월 / 2월 24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2월 24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2월 24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2월 24일~10월 10일                                       | 충청남도자연환경교육진흥공사 공주시 환경교육팀 20-3 (충청남도 공주)<br>TEL : 042-829-0908<br>FAX : 042-829-0908<br>E-mail : gongju@nhe.go.kr<br>www.nhe.go.kr               |
| <b>인생나무 (생태교육)</b><br>생태교육, 환경교육, 생태교육, 환경교육   | 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                                   | 충청남도자연환경교육진흥공사 공주시 자연환경교육팀 1003 (충청남도 공주)<br>TEL : 042-829-0908<br>FAX : 042-829-0908<br>E-mail : comjung@nhe.go.kr<br>www.nhe.go.kr            |
| <b>나도 할 수 있어요 (생태교육)</b><br>생태교육, 환경교육, 생태교육, 환경교육   | 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                                   | 충청남도자연환경교육진흥공사 공주시 자연환경교육팀 1003 (충청남도 공주)<br>TEL : 042-829-0908<br>FAX : 042-829-0908<br>E-mail : comjung@nhe.go.kr<br>www.nhe.go.kr            |
| <b>홍으로 만드는 세상, 여름이벤트, 새싹이파리, 영남꽃지예 (생태교육)</b><br>생태교육, 환경교육, 생태교육, 환경교육                      | 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br>일 시 : 4월~10월 / 10월 10일~10월 10일                                   | 충청남도자연환경교육진흥공사 공주시 자연환경교육팀 1003 (충청남도 공주)<br>TEL : 042-829-0908<br>FAX : 042-829-0908<br>E-mail : comjung@nhe.go.kr<br>www.nhe.go.kr            |

## 5. 충남 환경교육 자원

### 다. 환경교육시설 (2016년, 충청남도)

#### 1) 생활환경 - 환경기초시설 : 30개소

|    |   |
|----|---|
| 공주 | 공주시위생매립장, 하수종말처리시설                              |
| 보령 | 보령시쓰레기 매립장, 남포정수장, 보령시축산폐수처리시설                  |
| 아산 |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
| 서산 | 서산시 환경종합타운                                      |
| 논산 |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논산시 하수처리장 등                        |
| 계룡 | 계룡시 위생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시설                            |
| 당진 | 당진 송산 위생매립장, 음식물폐기물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
| 천안 | 맑은물 사업소   |
| 금산 | 금산정수장   |
| 부여 | 부여 위생매립장, 하수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온산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 서천 | 서천 하수종말처리장 등                                    |
| 청양 | 청양 환경사업소, 정산정수장, 하수처리시설                         |
| 홍성 | 홍성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홍성·광천하수처리시설                      |
| 예산 |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
| 태안 | 태안군쓰레기 매립장                                      |

## 5. 충남 환경교육 자원

### 다. 환경교육시설

#### 2) 자연환경중심 시설 : 34개소

|       |    |                |       |                         |                     |
|-------|----|----------------|-------|-------------------------|---------------------|
| 지형 지질 | 공주 | 계룡산, 제민천, 금강 등 | 해양 습지 | 공주                      | 정안천 연꽃공원 등          |
|       | 보령 | 성주산            |       | 보령                      | 대전만습지, 소항사구, 강당갯벌 등 |
|       | 계룡 | 향한리 자연도시공원     |       | 서산                      | 천수만                 |
|       | 당진 | 아미산, 삼선산당      |       | 계룡                      | 두계천 생태공원            |
|       | 부여 | 부소산, 만수산       |       | 당진                      | 당산생태공원, 석문호, 대호호    |
|       | 서천 | 봉선지 희리산 휴양림 등  |       | 금산                      | 천내습지                |
|       | 청양 | 칠갑산            |       | 부여                      | 궁남지                 |
|       | 홍성 | 오서산, 용봉산 등     |       | 서천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선도리갯벌장 등 |
|       | 태안 | 천리포수목원 등       |       | 청양                      | 칠갑지, 지천             |
|       |    | 홍성             |       | 천수만                     |                     |
|       |    | 태안             |       | 신두사구, 두웅습지, 천수만, 가로림만 등 |                     |

## 5. 충남 환경교육 자원

### 다. 환경교육시설

#### 3) 체험환경중심 시설 : 36개소

|               |    |                          |
|---------------|----|--------------------------|
| 농림<br>어업<br>등 | 공주 | 도예촌, 치즈체험마을 등            |
|               | 보령 | 강당갯벌, 토정체험마을 등           |
|               | 계룡 | 녹색체험마을 (도곡리)             |
|               | 당진 | 한진포구, 도비도갯벌체험            |
|               | 부여 | 송죽녹색농촌체험마을, 기와마을         |
|               | 서천 | 갈숲마을농촌체험, 들꽃동산마을, 벌꽃농장 등 |
|               | 청양 | 고운식물원, 체험마을 등            |
|               | 홍성 | 금마봉암마을, 속동 갯벌체험마을 등      |
|               | 태안 | 벚가리 마을, 갈두천 등            |

|    |    |                  |
|----|----|------------------|
| 생물 | 보령 | 소항사구(생태경관 보전지역)  |
|    | 서산 | 천수만 철새도래지        |
|    | 당진 | 삼교호 철새도래지 등      |
|    | 금산 | 금강생태과학체험관        |
|    | 서천 | 국립생태원, 조류생태전시관 등 |
|    | 청양 | 지천반딧불이축제         |
|    | 홍성 | 부면 궁리 등 철새도래지    |

## 6. 충남 환경교육 거버넌스 현황

### 충남환경교육실무협의회

- <설립> 2016년
- <목적> 충남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실무 협의회
- <구성>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충남환경교육센터, 국립생태원
- <운영> 년 1회
- <내용> 환경교육정책 협의와 상호 협력

### 충남지역환경교육센터 협의회

- <설립> 2017년
- <목적> 지역환경교육센터와 행정간 교류, 협력을 통한 충남 환경교육 활성화
- <구성> 충청남도, 광역센터(1), 지역센터(4), 기초 지자체(4)
- <운영> 년 5회
- <내용> 센터와 행정간 교류와 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환경교육 정책 제안과 협력



## 6. 충남 환경교육 거버넌스 현황

### 사례(1) 학교환경동아리 활동사례 발표대회 / 정보박람회

####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사례 발표대회>

- 충남교육청 '1학교 1환경동아리' 시책 관련
- 학교내 환경동아리 활동을 격려하고, 활성화와 우수사례 전파 위해
- 초등 6개팀, 중고등 6개팀 선정과 시상.
- 2016년 ~ 2018년 : 년 1회 진행



#### <학교환경교육 정보박람회>

-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의 만남과 교류의 장 마련
- 사회환경교육 안내와 상담 부스 마련(50여개), 각급 학교 교사 참여 (81개교, 2018년)
- 사회환경교육 활동 소개, 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 활동 소개 등



## 6. 충남 환경교육 거버넌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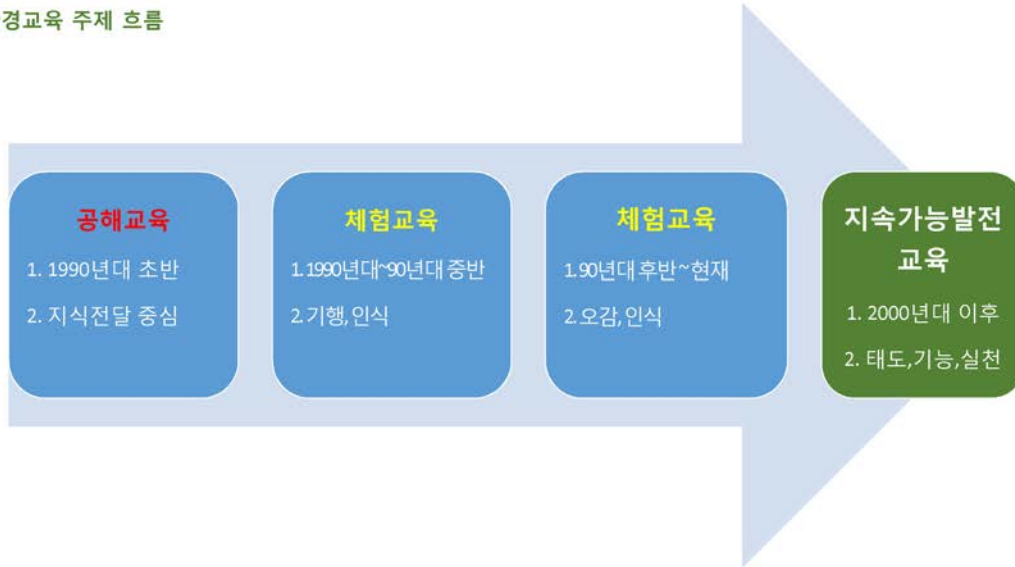
### 사례(2) 환경교육 시범마을

#### <경과 및 내용>

- 2015년 11월 한국환경교육한마당 공동 준비위원회 구성 (충청남도-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충남교육청-충남 홍성군)
- 2016년 8월 제12회 한국환경교육한마당 개최  
환경교육의 일상화 선언, '지역이 환경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2016년 9월 충남환경교육실무협의회 구성 : 충남형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고민
- 2017년 7월 충남환경혁신아카데미 : 마을을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 활성화 제시
- 2017년 8월 충남지역환경교육센터협의회 : 행정(광역, 기초) - 지역센터 협력을 통해 시범마을 사업 진행 결의
- 2018년 5월 환경교육시범마을 사업단 결성 :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충남센터, 전문가, 충남네트워크
- 2018년 8월 환경교육시범마을 사업 진행 : 4개 기초센터 중심으로 5개 마을 선정과 운영

## 7. 사회 환경교육 주요 흐름과 제안

가. 한국 환경교육 주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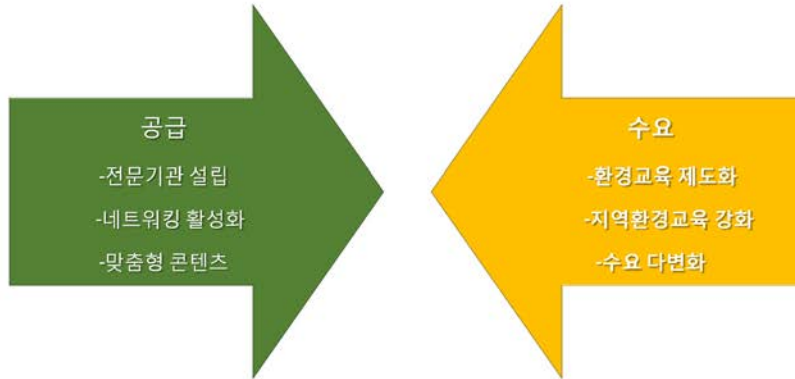
## 7. 사회 환경교육 주요 흐름과 제안





## 7. 사회 환경교육 주요 흐름과 제안

나. 최근의 환경교육 주요 흐름 : 제도화, 다변화, 통합성(지역성), 거버넌스



## 7. 사회 환경교육 주요 흐름과 제안

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주요 정책 흐름



## 7. 사회 환경교육 주요 흐름과 제안

라. 충남 지역환경교육 추진 전략(제안)

| 기반구축  | 지역 환경교육   | 학교환경교육   | 포괄적 환경교육 거버넌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 (경기, 충북, 경남도 등)</li> <li>- 도교육청 환경교육 전담 장학사 편제</li> <li>- 충남 학교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li> <li>- 질 좋은 공급자 발굴, 육성</li> <li>- 교사환경동아리(연구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지역)환경교육 특성화</li> <li>- 마을환경교육코디네이터</li> <li>- 생태농업, 텃밭가꾸기</li> <li>- 학교환경교육코디네이터</li> <li>- 지역 환경교육협의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학교환경교육사업단</li> <li>- 맞춤형 환경교육 교구재 개발과 보급</li> <li>- 환경교육 중심 혁신학교 모델 개발, 적용</li> <li>- 학교숲(연못), 실내화단, 태양광창문 등 친환경학교 만들기 추진</li> <li>- 환경동아리(교사, 학생) 확대와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환경교육실무협의회</li> <li>-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연계)</li> <li>- 충남학교환경교육네트워크</li> <li>- 환경교육 전담팀 (행정)</li> </ul> |

## 환경교육으로 행복한 충청남도



###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2018년 현재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도민환경교육, 교재·교구 개발, 전문가 양성, 민간환경교육 지원, 네트워크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최초의 종합형 환경교육센터

2009년 6월 개관한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2000년 이후 10여 년에 걸쳐 민간이 제안하고, 민간이 주도한 교육/양성, 연구/개발,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국내 첫 종합형 환경교육센터입니다.

### 민관협력 환경교육장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충청남도와 천안시, 시민과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해 조성한 민관협력사업의 성과로,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환경교육 통합센터입니다.

### 생태문화와 생태건축 교육장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4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숙박 공간, 야외무대, 생태도서전문 풀꽃도서관, 지열과 풍력-태양광발전, 자연정화시스템, 흙건축 기법을 망라한 생태문화와 생태건축 교육장입니다.

###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장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광덕산 자연 해설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인식, 기능, 태도, 실천 영역을 아울러 지역과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환경교육장입니다.

# 충청남도 학교환경교육 추진 현황

여원구(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사)



## 환경교육의 개요



-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 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 **학교환경교육:**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 **사회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

## 환경교육의 개요



## 학교환경교육 현황

### 환경 과목 선택 현황

| 학년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전국 평균(%)       | 8.9                 | 9.8                 | 8.6                 |
| 충남 평균(%)       | 17.0                | 18.0                | 16.0                |
| 학교 수<br>(중, 고) | 52<br>(중 40, 고 12교) | 55<br>(중 40, 고 15교) | 49<br>(중 39, 고 10교) |

## 학교환경교육 현황

### 환경동아리 조직 현황

| 학년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학교수    | 579(81.9%) | 401(55.3%) | 537(74.1%) |
| 예산(천원) | 226,052    | 177,019    | 249,096    |

#### ● 학교예산 편성 지침에 환경사랑 학생동아리 운영 예산 편성 명시

- 초,중학교: 40만원 이상 권장
- 고등학교: 50만원 이상 권장

## 학교환경교육 현황

### 환경동아리 활성화 지원

#### ● 환경동아리 지도자료 개발 보급

-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환경사랑 학생동아리 교육자료
- 에너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토론교육자료
- 적정기술을 활용한 학생동아리 지도자료

#### ● 환경동아리 지도교사 역량강화 워크숍

- 환경동아리 발표대회 사례발표
- 환경교육 관련 특강

## 학교환경교육 현황

### 환경관련 연구학교 운영

| 학년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학교수 | 2        | 1     | 1     |
| 학교명 | 대천초, 선장초 | 온양신정중 | 온양신정중 |

| 방향            | 내용  |
|---------------|---|
| 교육 환경 조성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기전력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에코 북 카페, 역량강화 연수, 에너지 레터 |
| 교수 학습 프로그램 운영 | 관련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환경교육,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프로그램 운영.                    |
| 생활습관 함양 교육    | 동아리 활동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활동                               |

## 학교환경교육 현황

### 환경관련 연구학교 운영



[환경 교육 환경 조성]

## 학교환경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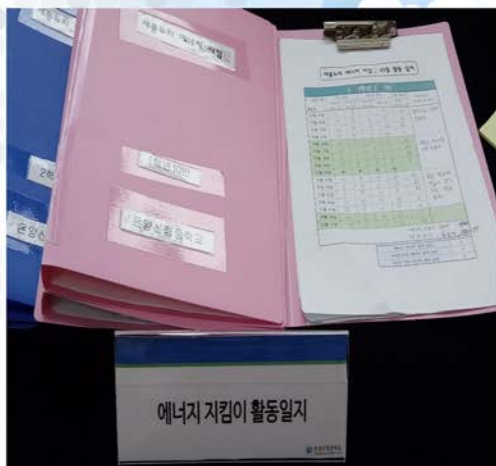
### 환경관련 연구학교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 환경 교육]

## 학교환경교육 현황

### 환경관련 연구학교 운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교환경교육 현황

### 충남초록에너지학교 운영 계획

| 학년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학교 수      | 14     | 28      | 42      |
| 관련 예산(천원) | 70,000 | 140,000 | 210,000 |

| 방향            | 내용                     |
|---------------|------------------------|
| 교육 환경 조성      | 정책 연구 결과 반영하여 내용 결정 예정 |
| 교수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정책 연구 결과 반영하여 내용 결정 예정 |
| 생활습관 함양 교육    | 정책 연구 결과 반영하여 내용 결정 예정 |

## 지역과의 연계 협력

### 여름철 전기절약을 위한 절전노트

- 충청남도, 에너지관리공단 연계
- 여름방학 과제물 절전노트 쓰기, 149교 28,000부 배부

###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

- 충청남도, 에너지관리공단 연계
- 123교, 학생 약 6,000명 참여



## 지역과의 연계 협력

### 환경 관련 대회 후원

- 환경토론대회 : 중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환경동아리 사례 발표대회: 중남환경교육센터
- 독서그린벨대회: 한국에너지공단
- 물의날 기념 그림공모전: 충청남도

### 기타 업무 협조

- 환경 정보지(중남환경교육센터 발행)를 통한 지역사회 환경단체 홍보
- 중남환경교육한마당의 학교환경교육정보박람회를 통한 학교와 환경단체 연결
- 환경관련 특수분야 직무연수 승인 및 홍보 협조: 국립생태원, 천리포수목원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학교환경교육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환경교육의 주체는 교사

교사들의 환경교육역량 강화(특수분야 직무연수 개설)

학부모 대상 환경교육

친환경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충청남도 환경교육조례 개정 관련 제안

이재영(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 1. 환경교육 시설 등록제도 준비

- 아직까지 충남에 어떤 환경교육시설, 기관, 단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안됨
-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한 3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충청남도 환경교육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시설, 기관, 단체는 약 70개 정도임
- 환경부에서 2019년도에 준비하여 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시행 계획
-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등록 및 지원제도 준비 필요
- 환경교육 시설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필요

## 2. 환경교육 시설 운영 현황 평가 및 평가 기준 개발

- 수십억 또는 수백억을 들여 조성한 시설이 개점휴업인 경우가 적지 않음. 이 시설들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연간 운영비, 인건비 현황
  - 자격을 가진 전문가 배치 현황
  - 연간 운영 프로그램 현황
  - 연간 방문객 수와 만족도 조사 결과
- 건립비, 조성비 대비 교육성과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함
  - 보령의 갯벌생태과학관, 태안의 기름유출극복기념관, 신두리사구센터 등
- 평가 결과에 따라서 도비 지원 차등화
  - 전문인력을 고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일자리 창출과 연계
- 평가 과정에서 교육인원만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함께 평가하는 체계 도입
  - 예, 인원-시간 병행평가제

## 3. 충남 환경교육 기금 조성

- 기금 조성 방안
  - 환경오염부담금 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5~10%)를 환경교육 기금으로 조성
  - 충청남도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등 환경에 부담을 주는 시설
  - 충남의 환경 관련 기업의 참여 유도 방안(감세 등)
  - 충남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수도권에 기금의 일부를 요구
  - 금강의 수계 기금 활용 방안 검토
-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과 사회환경교육 전문가 인건비로 사용

- 내륙과 해안의 쓰레기 줄이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연간 수집액 이상을 쓰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

#### 4. 환경교육지도사 고용 지원

- 환경교육(전문)시설로 등록된 시설, 기관에 대해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고용 지원
- 기금을 재원으로 시설 당 1인에 대해 3~5년간 평가를 통해 인건비의 50% 지원
- 농어촌체험마을, 환경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포함

#### 5. 충남형 학교 환경교육 도입

-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가 협력하여 지원체계 마련
- 이미 성남, 수원, 시흥, 경남교육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 일정 학년(초2, 초5, 중1 등)의 학생들이 1년에 일정 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받도록 함
  -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자유학년제와 연계 강화
  - 고등학교의 경우 환경 동아리 활동과의 연계 강화
- 환경교육 전문가가 배치되어있고 인증된 프로그램을 가진 시설에서 현장체험학습 실시

#### 6. 환경교육네트워크의 위상 제고

- 환경교육 정보지 사업 확대 및 내실화
  - 환경교육 시설 등록제도를 통해 참여하는 시설, 기관의 확대
  - 정보지를 배포하는 시설, 기관 단체, 학교의 확대
  - 정보지를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충남 환경교육 컨설팅 그룹의 구성과 운영
  - 환경교육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 지원
  - 예, 보령갯벌생태과학관: 한번도 와보지 않은 서울 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실정

#### 7. 지역의 생태축제와 환경교육 연계

- 충남에는 매년 수십개의 생태환경 관련 축제가 열리고 있음
  - 예, 서천 철새축제, 한산모시축제, 신성리갈대밭축제, 주꾸미축제, 꿀갑축제 등
-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드문 실정
  -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고 놀게 하는 축제로 인식
- 충청남도의 생태축제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연해설가 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8.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선포

- 성남, 수원, 서울, 창원 등이 환경교육도시 또는 유사 도시 선언

- 충청남도에는 환경교육도시가 전혀 없는 실정임
- 환경교육진흥법에 환경교육도시 관련 조항 추가 검토 중
- 환경교육도시 및 해양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도록 유도하고 지원
  - 예, 태안: 기름유출사고를 극복했다는 상징성
  - 예, 서천: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등 국가 수준의 생태환경교육 거점시설

#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현황분석을 통한 충청남도 학교환경교육조례 제언

오창길((사)자연의벗연구소 소장)

## 1

## 개요

### □ 법적근거

####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지님

####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국민인식의 증진 책무를 지님

### □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현황<sup>5)</sup>

#### 5) 1.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6.11.8] [조례 제5339호, 2016.11.8,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 특성화교육과)

#### 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3.2.21] [조례 제3403호, 2013.2.21, 제정]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직업교육과)

#### 3.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3. 9. 27.] [조례 제3576호, 2013. 9. 27.,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과학국제문화과)

#### 4.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7.31] [조례 제3869호, 2015.7.31, 제정]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창의진로과)

#### 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5.10.29] [조례 제4058호, 2015.10.29, 제정]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창의인재과)

####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6.5.16] [조례 제1621호, 2016.5.16,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 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6. 8. 10.] [조례 제886호, 2016. 8. 10.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창의인재교육과)

#### 8.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7.3.10] [조례 제4934호, 2017.3.10, 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과학직업정보과)

#### 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시행 2017.7.7] [조례 제4920호, 2017.7.7,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과학직업정보과)

####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8.1.4] [조례 제6795호, 2018.1.4,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 교육부 산하 전국 시도교육청 현황 :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7개
  - 특별시교육청 1, 도교육청 8, 광역시교육청 6, 특별자치시교육청 1, 특별자치도교육청 1
- 시도 교육청 환경교육 관련조례 제정·운영 현황 : 10개 교육청

| 연번 | 교육청      | 조례명                           | 최초시행일                                | 담당부서    |
|----|----------|-------------------------------|--------------------------------------|---------|
| 1  | 경기도교육청   |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br>(9개 조항 및 부칙)   | 2012. 5. 10.<br>(2016.11.8,<br>일부개정) | 특성화교육과  |
| 2  | 경상북도교육청  |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br>(11개 조항 및 부칙)  | 2013. 2. 21.                         | 과학직업교육과 |
| 3  | 충청북도교육청  |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br>(12개 조항 및 부칙)  | 2013. 9. 27.                         | 과학국제문화과 |
| 4  | 강원도교육청   | 생태환경교육 진흥조례<br>(5개 조항 및 부칙)   | 2015. 7. 31.                         | 창의진로과   |
| 5  | 경상남도교육청  |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조례<br>(8개 조항 및 부칙) | 2015. 10. 29.                        | 과학직업과   |
| 6  | 제주도교육청   |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조례<br>(7개 조항 및 부칙) | 2016. 5. 16                          | 미래인재교육과 |
| 7  | 세종시교육청   |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br>(8개 조항 및 부칙)   | 2016. 8. 10                          | 창의인재교육과 |
| 8  | 대구광역시교육청 |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br>(6개 조항 및 부칙)   | 2017. 3. 10                          | 과학직업정보과 |
| 9  | 대전광역시교육청 |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br>(6개 조항 및 부칙)   | 2017. 7. 7                           | 과학직업정보과 |
| 10 | 서울시교육청   |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br>(8개 조항 및 부칙)   | 2018. 1. 4                           | 교육혁신과   |

## 2

## 시도교육청 조례현황 분석

### □ 시도교육청 조례 개요

- 경기도교육청(9개 조항 및 부칙), 경상북도교육청(11개 조항 및 부칙), 충청북도교육청(12개 조항 및 부칙) 강원도교육청( 5개 조항 및 부칙), 경남교육청(개 조항 및 부칙)(12개 조항 및 부칙) 등 조례의 기본내용은 유사
  - 목적, 정의, 책무,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환경교육관련 협의회 설치·운영 등 유사
- 각 시도교육청 조례 중 타 시도교육청과 차별화된 조항 현황
  - 경기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 경상북도교육청 :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 충청북도교육청 : 시범학교 지정·운영, 협력체계 구축
  -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사업, 법령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
  - 경상남도교육청: 진흥협의회 설치 및기능, 협의회 구성

- 제주도교육청: 외부전문가 자문, 사업지원
- 세종시교육청: 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대구교육청: 기본계획수립
- 대전교육청: 기본계획, 사업, 포상,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 구분   | ①경기도교육청                     | ②경상북도교육청                   | ③충청북도교육청                   | ④강원도교육청            | ⑤경상남도교육청                     |
|------|-----------------------------|----------------------------|----------------------------|--------------------|------------------------------|
| 제1조  | 목적                          | 목적                         | 목적                         | 목적                 | 목적                           |
| 제2조  | 정의                          | 정의                         | 용어의 정의                     | 정의                 | 정의                           |
| 제3조  | 책무                          | 교육감의 책무                    | 교육감의 책무                    | 교육감의 책무            | 교육감의 책무                      |
| 제4조  | 학교환경교육<br>기본계획              | 학교환경교육<br>기본계획의 수립         | 학교환경교육<br>기본계획 수립          | 법령 및 다른<br>조례와의 관계 | 학교생태환경교육<br>기본계획 수립          |
| 제5조  | 학교환경교육<br>진흥협의회 설치          | 학교환경교육<br>진흥협의회 설치<br>및 기능 | 학교환경교육진흥<br>위원회 설치 및<br>기능 | 생태환경교육사업           | 학교생태환경교육<br>진흥협의회 설치<br>및 기능 |
| 제6조  | 학교환경교육<br>진흥협의회 구성          | 학교환경교육<br>진흥협의회<br>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 협의회 구성                       |
| 제7조  | 수당 지급                       | 임기                         | 위원회 회의 및<br>운영             |                    | 수당                           |
| 제8조  | 지역교육청<br>학교환경교육<br>실무협의회 구성 | 회의                         | 위원 수당 등                    |                    | 시행규칙                         |
| 제9조  | 운영세칙                        | 수당지급                       | 위원회 운영세칙                   |                    |                              |
| 제10조 |                             | 학교환경교육의<br>활성화             | 시범학교<br>지정·운영              |                    |                              |
| 제11조 |                             | 시행규칙                       | 협력체계 구축                    |                    |                              |
| 제12조 |                             |                            | 운영세칙                       |                    |                              |

□ 환경교육진흥법 및 시도교육청 조례 비교

- 환경교육진흥법에는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환경교육센터 등의 내용이 포함



| 구분  | ⑥제주도교육청           | ⑦세종시교육청               | ⑧대구시교육청         | ⑨대전시교육청     | ⑩서울시교육청          |
|-----|-------------------|-----------------------|-----------------|-------------|------------------|
| 제1조 | 목적                | 목적                    | 목적              | 목적          | 목적               |
| 제2조 | 정의                | 정의                    | 정의              | 교육감의 책무     | 정의               |
| 제3조 | 도교육감의 책무          | 책무                    | 교육감의 책무         | 학교환경교육기본 계획 | 책무               |
| 제4조 | 학교생태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 사업          |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
| 제5조 |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 포상          | 학교환경교육자문 위원회의 설치 |
| 제6조 | 사업지원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시행규칙            | 협력체계 구축     | 학교환경교육자문 위원회의 구성 |
| 제7조 | 시행규칙              | 수당지급                  |                 |             | 수당               |
| 제8조 |                   | 시행규칙                  |                 |             | 시행규칙             |

| 구분   | 경기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 환경교육진흥법          |
|------|-------------------------|-----------------------|----------------------|------------------|
| 제1조  | 목적                      | 목적                    | 목적                   | 목적               |
| 제2조  | 정의                      | 정의                    | 용어의 정의               | 정의               |
| 제3조  | 책무                      | 교육감의 책무               | 교육감의 책무              | 다른법률과의 관계        |
| 제4조  | 학교환경교육 기본 계획            | 학교환경교육 기본 계획의 수립      | 학교환경교육 기본 계획 수립      | 책무               |
| 제5조  | 학교환경교육 진흥 협의회 설치        | 학교환경교육 진흥 협의회 설치 및 기능 | 학교환경교육진흥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
| 제6조  | 학교환경교육 진흥 협의회 구성        | 학교환경교육 진흥 협의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
| 제7조  | 수당 지급                   | 임기                    | 위원회 회의 및 운영          |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 제8조  | 지역교육청 학교환경 교육 실무협의회의 구성 | 회의                    | 위원 수당 등              |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 제9조  | 운영세칙                    | 수당지급                  | 위원회 운영세칙             |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
| 제10조 |                         |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 시범학교 지정·운영           | 사회환경교육의 지원       |
| 제11조 |                         | 시행규칙                  | 협력체계 구축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       |  |  |      |                      |
|-------|--|--|------|----------------------|
| 제 12조 |  |  | 운영세칙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
| 제 13조 |  |  |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
| 제 14조 |  |  |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
| 제 15조 |  |  |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
| 제 16조 |  |  |      |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 제 17조 |  |  |      | 경비지원 및 보조            |
| 제 18조 |  |  |      | 권한의 위임·위탁            |
| 제 19조 |  |  |      | 청문                   |
| 제 20조 |  |  |      | 과태료                  |

□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세부조항별 비교

○ 시도교육청 환경교육조례 제정의 목적

- 경상북도교육청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기본 개념을 인용하여 명시
-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정 정치적 이념인 ‘저탄소 녹색사회’를 조례상에 명시하여 시의성(저탄소 녹색성장→지속가능한 사회) 반영에 한계

| 구분    | 경기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
|-------|---|--|--|
| 조례 목적 |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환경 친화적 생활능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시도교육청 환경교육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교육의 정의

- 3개 시도교육청 모두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교육’의 정의를 인용하여 명시

| 구분           | 경기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
|--------------|---|---|--|
| 학교 환경 교육의 정의 |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책무

- 환경교육진흥법과 같이 시도교육감의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구분     | 경기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
|--------|---|--|---|
| 교육감 책무 | ①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br>②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 ①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br>②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 ①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시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 3개 시도교육청 모두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매년 수립)
- 환경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담당 교원 연수, 환경동아리 및 환경체험 활동 지원, 에너지 절약·저탄소 녹색실천·신재생에너지 체험 등은 3개 시도교육청 유사
-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창의·인성교육과의 연계,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등을 명시하여 타 시도교육청과 차별화

| 구분                         | 경기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
|----------------------------|--|---|---|
| 학교<br>환경<br>교육<br>기본<br>계획 | <p>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p> <p>2.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p> <p>3.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p> <p>4.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 <p>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p> <p>2.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p> <p>3.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p> <p>4.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 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 <p>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창의·인성교육과 연계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p> <p>2. 학교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p> <p>3. 환경동아리, 환경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p> <p>4.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p> <p>5. 교원의 학교환경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p> <p>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p> |

○ 시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관련 회의체계 설치

- 3개 시도교육청 모두 학교환경교육 진흥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회의 체계를 구성하도록 함
-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한 자문수행으로 교육정책 수립·시행에 미치는 영향력 미약

| 구분                               | 경기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
|----------------------------------|--|--|---|
| 학교<br>환경<br>교육<br>관련<br>회의<br>체계 | <p>①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 <p>①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 <p>①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학교환경교육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

|     |   |   |                                    |
|-----|---|---|------------------------------------|
| 설치)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     |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 2.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 2.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 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 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 시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관련 회의체계 구성

- 3개 시도교육청 모두 15인 내외로 구성, 협의회장 교육국장, 부협의회장 민간위원(위촉직 가운데 호선) 등 조항 유사
-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양성평등 노력 반영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담당 장학관) 등 명시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문회의에 무엇보다 중요한 회의주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로 정하고 있어 실무 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가 조절될 수 있음

| 구분   | 경기도교육청<br>(제6조)  | 경상북도교육청<br>(제6조 ~ 제8조)   | 충청북도교육청<br>(제6조 ~ 제7조)   |
|--|--|--|--|
| 학교<br>환경<br>교육<br>관련<br>회의<br>체계<br>구성<br>·<br>위원<br>임기<br>·<br>회의<br>주기 | <b>제6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의 구성)</b><br>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 협의회장은 교육2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2.27. 조4853><br>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br>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 | <b>제6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b><br>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 협의회장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br>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장 및 환경교육담당과장으로 한다.<br>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b>제6조(위원회 구성)</b><br>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br>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 학교환경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br>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br>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 |

|  |   |  |   |
|--|---|--|---|
|  | <p>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p> <p>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본청 소속의 환경교육 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 담당 장학사가 된다.</p> | <p>⑤ 협의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p> <p><b>제7조(임기)</b></p> <p>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기존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b>제8조(회의)</b></p> <p>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p> <p>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환경교육 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 담당 장학사가 된다.</p> | <p>감이 위촉한다.</p> <p>⑤ 당연직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기관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⑥ 교육감은 위원 중 질병,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b>제7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b></p> <p>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환경교육 담당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p> |
|--|---|--|---|

- 지역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 경기도교육청 조례
  - 지역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관련 자문회의 구성 등에 대한 임의규정 명시
-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 경상북도교육청 조례
  - 경상북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가능
  -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실현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연계 가능성 명시
- 환경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 환경교육진흥법상 지역환경교육센터와 유사한 기능·역할 수행이 가능한 시범학교 지정·운영 명시(임의규정)
  -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연계 가능성 명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환경 친화적 생활능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사회와 교육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한다.

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 내용(에너지, 기후변화, 미세먼지, 자원순환, 물순환, 학교숲과 텃밭교육 등)
3. 학교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네트워크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7. 교육청 계획에 따른 자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학교환경교육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네트워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 학교환경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⑤ 당연직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기관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교육감은 위원 중 질병,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환경교육 담당부서의 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③ 시범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네트워크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1>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3.9.27.] [충청북도조례 제3576호, 2013.9.2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환경 친화적 생활능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의·인성교육과 연계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환경동아리, 환경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학교환경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학교환경교육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 학교환경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⑤ 당연직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기관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교육감은 위원 중 질병,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환경교육 담당부서의 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③ 시범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76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2>

###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 2014.8.3.] [충청북도조례 제3659호, 2014.5.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부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 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 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 숲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학교숲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숲은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성
3. 접근성 확대: 학교숲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 제6조(학교숲 관리)

- ① 교육감은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 ①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숲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3659호, 2014.5.2>

이 조례는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교육 활성화 의원연구모임 회원명부

(회원 : 20명)

| 구 분  | 성 명 |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 비 고  |
|------|-----|---------------|------|
| 대표자  | 홍기후 | 행정자치위원회       | 도의원  |
| 의원회원 | 안장헌 | 교육위원회         | 도의원  |
| 의원회원 | 김득응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도의원  |
| 의원회원 | 최 훈 | 문화복지위원회       | 도의원  |
| 의원회원 | 이선영 | 행정자치위원회       | 도의원  |
| 간 사  | 차수철 |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 중간지원 |
| 회 원  | 박노찬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중간지원 |
| 회 원  | 이재영 |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 학계   |
| 회 원  | 이광영 |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학계   |
| 회 원  | 황상연 |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 행정   |
| 회 원  | 전종현 | 충청남도교육청       | 행정   |
| 회 원  | 박완희 | 청주시의회 의원      | 타시도  |
| 회 원  | 최병조 |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타시도  |
| 회 원  | 구지은 | 생태교육센터 위드     | 민간   |
| 회 원  | 문순수 | (사)내포문화숲길     | 민간   |
| 회 원  | 구자명 | 한마음고등학교       | 학교   |
| 회 원  | 김영갑 | 거산초등학교        | 학교   |
| 회 원  | 이동준 |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중간지원 |
| 회 원  | 권경숙 |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 중간지원 |
| 회 원  | 김문옥 |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 중간지원 |

## 관련 보도 자료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 대응 연구활동 돌입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 2018-09-20 10:23



- 홍기후 의원 대표...환경교육활성화 연구모임 창립, 지속가능 발전 연구
- 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개정안 및 도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 계획

환경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남도의회 환경교육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기후)은 20일 도의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고, 환경교육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을 통해 '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개정안' 및 '도 학교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연구모임에 따르면 1990년대 말 환경단체 등이 창립하면서 환경교육이 시작됐으나, 현재까지 교육체제나 교육시스템 기반 구축이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홍 대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환경교육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모임은 2018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정책연구 활동을 진행한 후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내포)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mailto:hmher@ajunews.com)

충남도의회 ‘환경교육활성화연구모임’ 창립

- (금강일보) 문승현 기자



충남도의회 ‘환경교육활성화연구모임’이 20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후 의원(당진1·앞줄 가운데)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충남도의회 제공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 대응 연구활동 돌입

홍기후 의원 대표... 환경교육활성화 연구모임 창립, 지속가능 발전 연구  
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개정안 및 도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 계획

[당진신문] 충남도의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환경교육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기후)은 20일 도의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고, 환경교육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을 통해 ‘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개정안’ 및 ‘도 학교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사진제공=충남도청

연구모임에 따르면 1990년대 말 환경단체 등이 창립하면서 환경교육이 시작됐으나, 현재까지 교육체제나 교육시스템 기반 구축이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홍 대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환경교육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모임은 2018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정책연구 활동을 진행한 후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청도의회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하기 위한 연구 활동에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환경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이 창립총회를 갖고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체계화된 환경교육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1990년대 말 환경단체 등이 창립하면서 환경교육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교육 체계나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다.

이들은 연구활동을 통해 '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개정안'과 '도 학교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을 마련할 복안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3차례 정책연구를 갖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자라나는 아이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교육을 제공해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의회 환경교육활성화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환경교육활성화 연구모임은 20일 도의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고, 환경교육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구모임은 '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개정안' 및 '도 학교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충남도의회, 기후변화·환경오염 대응 연구활동 돌입 홍기후 의원 대표...환경교육활성화 연구모임 창립  
김정환 | [kjhwan00@hanmail.net](mailto:kjhwan00@hanmail.net)



충남도의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환경교육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기후)은 20일 도의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고, 환경교육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에

등을 통해 '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개정안' 및 '도 학교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연모임에 따르면 1990년대 말 환경단체 등이 창립하면서 환경교육이 시작됐으나, 현재까지 교육체제나 교육시스템 기반 구축이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홍 대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환경교육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모임은 2018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정책연구 활동을 진행한 후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충청권 최대 일간신문 **충청투데이** [www.cctoday.co.kr](http://www.cctoday.co.kr)

충남도의회,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 연구활동 돌입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mailto:top7367@cctoday.co.kr) 2018년 09월 21일 금요일 제5면

충남도의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환경교육활성화 연구모임은 20일 도의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고 환경교육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을 통해 '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개정안' 및 '도 학교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 등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연구모임에 따르면 1990년대 말 환경단체 등이 창립되면서 환경교육이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교육체제나 교육시스템 기반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홍 대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환경교육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mailto:top7367@cctoday.co.kr)

# 충도일보

충남도의회, 미세먼지 대응 연구활동 돌입  
환경교육활성화 연구모임 창립총회... 대표에 홍기후 의원

충남도의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환경교육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기후)은 20일 도의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고, 환경교육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을 통해 '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개정안' 및 '도 학교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연구모임에 따르면 1990년대 말 환경단체 등이 창립하면서 환경교육이 시작됐으나, 현재까지 교육체제나 교육시스템 기반 구축이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홍 대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환경교육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오는 12월까지 3차에 걸쳐 정책연구 활동을 진행한 후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 당진신문

홍기후 도의원, 제3차 충청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개최

[당진신문] 충청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기후)은 21일 충남도서관 회의실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3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이번 워크숍은 ‘충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 개정안’과 ‘충남도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내용은 △환경교육 시설 등록제도 도입 △환경교육 시설 운영 현황 평가 및 평가기준 개발 △충남환경교육 기금 조성 △환경교육 지도자 고용 지원 △충남형 학교 환경교육 도입 등 충청남도 환경교육에 대한 각종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기후 의원(당진1)은 “지역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 등 법령을 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각 시·군의 환경교육 자원들을 활용한 환경교육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의원연구모임 종합 토론편(요약)

## 충청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제3차 워크숍(종합토론편 요약)

- 일시 : 2018. 11. 21. 수. 10:30~12:00
- 장소 : 충남도서관 2층 회의실
- 목적 : 충청남도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및 제정 방향 종합 토론
- 내용 :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 개정안과 충청남도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 검토
- 진행순서
  - 사회자 : 차수철
  - 좌 장 : 안장헌
  - 발 제 : 이재영, 오창길

### ■ 모임사진



### ■ 내용 요약

#### □ 발제내용

- 이재영(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주제: 충청남도 환경교육 개정 관련 제안

#### 1) 환경교육 시설 등록제도 준비

- : 환경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기 어려움
- : 환경교육 시설, 기관, 단체, 프로그램의 현황 파악 미비
- : 환경부에서 이러한 시설의 등록제도 준비중

- : 등록제도의 목적은 규제가 아닌 지원 방법을 알기 위해서임
- :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등록 및 지원제도를 준비 제안
- 2) 환경교육 시설 운영 현황 평가 및 평가 기준 개발
  - :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한 시설들의 운영 현황 파악 필요
  - :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인원수가 아닌 질을 평가하는 체계 도입 필요
  -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차등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과 연계
- 3) 충남 환경교육 기금 조성
  - : 여러 기금 조성 방안 제안
  - :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과 사회환경교육전문가 인건비 해결
  - : 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쓰이는 수계기금의 활용방안 검토
- 4) 환경교육지도사 고용 지원
  - : 환경교육 시설에 사회환경지도사의 고용 지원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 지원
- 5) 충남형 학교 환경교육 도입
  - :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가 협력하여 지원체계 마련
  - : 성남, 수원, 시흥,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음
  - : 환경교육 전문가가 배치된, 인증된 프로그램이 있는 시설에서 체험학습 실시 제안
- 6) 환경교육네트워크의 위상 제고
  - : 충남환경교육센터에서 발행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정보지를 통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 등록된 시설, 기관의 활성화에도 도움
  - : 충남 환경교육 컨설팅 그룹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도내 시설, 기관에 정확하고 효과적인 도움이 필요.
- 7) 지역이 생태축제와 환경교육 연계
  - : 지역의 많은 생태축제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제도 제안
  -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연해설가 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8)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선포
  - : 충남은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있는 형태로 그 특성을 잘 살려 환경교육도시 지정 지원 필요
  - : 환경교육진흥법에 환경교육도시 관련 조항 추가 검토 중

■ 오창길((사)자연의벗연구소 소장)

-주제: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현황분석을 통한 충청남도 학교환경교육조례 제언

1) 개요

- : 학교환경교육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2) 시도교육청 조례현황 분석

- : 교육부 산하 전국 시도교육청 17개 중 10개 교육청에 환경교육 관련 조례 제정, 운영 중
- : 타시도와 차별화된 조항 현황
  - 경기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 경상북도교육청 :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 충청북도교육청 : 시범학교 지정·운영, 협력체계 구축
  - 강원도교육청 : 생태환경교육사업, 법령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

- 경상남도교육청 : 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특히 습지교육특화)
- 제주도교육청 : 외부전문가 자문, 사업지원
- 세종시교육청 : 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대구교육청 : 기본계획수립
- 대전교육청 : 기본계획, 사업, 포상,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교육청 :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 제안

- 조례 제정시 보통 교육청 장학사들이 하는데 지역의 환경교육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 조례에 시설이나 인력에 관한 부분 포함 필요

### 3) 충청남도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안)

- : 4조 6번의 내용은 다른 시도에는 아직 없는 내용으로 포함했으면 좋겠음.
-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네트워크와의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 : 재원조달 방안 포함도 필요
- : 위원회의 자격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 : 제10조 시범학교 지정 운영 조항도 중요
- : 제11조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

### □ 토론

: 세종시의 경우 사회환경교육쪽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아, 기본계획이 있으니 학교안에서는 환경교육을 조금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밖과는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음. 또 예산이 너무 적음. 학교 환경교육 조례에 교육감의 책무라는 용어를 의무로 표현하고 구체적인 활동안을 넣는다면 환경교육 의무화에 맥이 통할 것 같다.

#### ■ 정리:안장현

시민사회와의 연계. 교육감이 실제 할 일로 규정하자는 것.

: 우리학교(한마음고)는 충남에서 유일한 꿈꾸는 학교이다. 현 교육감이 부임하고 학교마다 텃밭이 활성화가 되었으며, 각 학교의 교사도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교육청에서의 지원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 교육청이 이런 회의 협의체 참석이 강제화(의무화) 되어 함께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

:충남 교육청에서 이미 실제 하고 있는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함께 하는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 충남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지역의 환경교육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하는 관의 역할과 의지도 매우 중요한데 충남은 그동안 많이 지원해줬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게 뭐가 있을까?

도민환경교육위원회 같은 민관협력에 기초한 컨트롤타워가 고려되어야 한다.

충남 시책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환경교육의무화의 시발을 만드는 것이다.

학교차원에서 의무화를 사회환경교육부분에서 어떻게 만들어갈것인가 고민 필요. 나아가 공공기관의 환경교육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충남도가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환경교육 의무화 어떻게 할것인가를 고민.



환경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네트워크할 수 있는 제도, 지원체제가 필요하니 검토 필요. 등록제도도 이런 부분에서 매우 의미하다고 생각.

환경교육 기금부분도 화력발전소 지역발전기금 같이 이미 존재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함께 활용하는 방법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

시범학교라는 명칭보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여 학교환경교육으로 검토

: 대만처럼 공공기관의 환경교육 의무화 추진

다양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연계교육 필요

지역자원세를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학교환경교육은 지역이 특성에 맞게 명명하고 운영

: 금강수계기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현재 대부분 상류에만 쓰이고 있다. 이런 기금을 활용할수 없을까.

: 금강수계기금은 금강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논의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금강자체의 건강함에 대한 것이다. 기금 활용 관련해서 제안을 한번 해보겠다.

: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은 환경교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

전문적인 교사 1인보다 다양한 교사가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간의 협력이다.

충청남도 관련된 부서간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런 연구모임처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듯하다.

조례에 오염유발 시설의 종사자는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넣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조례는 결과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연구모임이 헛되지 않고 성과를 이루어 도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호흡하는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환경교육이라는 말이 사회적 담론이 안되는게 안타까운데 자원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등의 모임에서 환경교육과 소통하길 바란다. 환경교육이라고 크게 말하지 않아도 다른 조직과 연계해서 하자

: 현장에서 교육을 해보면 서로 협력해서 소통할 수 있는 조직들이 다 따로따로 놓고있다고 느꼈다. 마을만들기 등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되고 있다는게 안타깝다. 이런 조직들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현장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때 학교와 연계하려고 보니 어느 부서(환경부, 산림청, 문체부?)에 요청해야할지 너무 다양해서 고민했다. 이는 환경교육이 다양한 분야에 녹아들어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같이 미세먼지, 기후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을 정도로 환경교육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연구모임을 하면서 희미했던 길이 선명해지는 듯 했고, 평소 고민했던 문제의식을 이재영교수님이 지적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기회가 충남환경교육의 길라잡이가 되는 듯하다.

아쉬웠던점은 우리 단체가 인증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할것인가 고민이다. 아직도 현장은 너무 열악해서 장기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모임이 계기가 되어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이 잘 되면 좋겠다.

: 세종시는 학교환경교육조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이 환경교육 비전문인이 많아 오히려 환경교육의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충남형 조례를 만들 때 실제적으로 학교환경교육, 충남환경교육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 환경교육교사를 전문가 양성보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교사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낫다는데 동의한다.

다양한 조직들의 교육(민주시민교육 등)과 환경교육을 어떻게 묶어낼것인가 중요하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아우를수 있는 후속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 충남의 경우 사회환경교육을 하시는분들이 많아 잘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환경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너무 좁게 얘기하는게 문제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게 환경교육이다. 해야할 일이 아직 많으니 어떤 형태로든 많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 환경교육네트워크 관련해서 내포쪽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홍성기상~, 기상과학관도 곧 생기는데 이런 기관을 잘 활용해서 환경교육을 진행하기 바란다.

충남제2차환경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매년 1개씩 늘리고 있는데 지금 응모기간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

: 1. 보고서로 정리해서 11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겠다.

2. 충남환경교육조례개정안, 학교환경교육조례제정안 작성이 구체적으로 시작될 때 다시 한 번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겠다.

3. 시책으로 정리할 내용 따로 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겠다.

홍기후 모임 대표

: 이번 3번의 연구모임후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관련해서는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